

발간 등록 번호

11-B280003-000477-01

환경 ODA 사업으로의 녹색기후기금 능력배양사업

2014. 10



환경 ODA 사업으로의 녹색기후기금 능력배양사업

2014. 10

ODA연구팀
홍은경

저자

홍은경 Ph. D. (Email: shireen@koica.go.kr)

▶ 주요 경력

- KOICA ODA 연구팀 상임연구원 (현)
-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기후변화 정책 및 평가 박사, Ph. D.
(Interdisciplinary Ph. D. in Climate Change Policy and Assessment)
- Alaska Center for Climate Assessment and Policy 연구원
- Resilience and Adaptation Program 수료/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 주요 연구실적

- 녹색기후기금과 능력배양사업(Readiness Program), 개발과 이슈, 2014, KOICA
- Post-2015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ODA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2013, KOICA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국문요약	1
1. 서론	3
1.1. 연구의 배경	3
1.2. ODA 사업으로의 기후변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필요성	6
1.3. 연구의 범위, 목적 및 방법	6
2. GCF 개요 및 특징	8
2.1. GCF 개요	8
2.2. 수원국 주인의식(Country Ownership)	9
2.3. 직접접근(Direct Access)	12
3. 이행기관의 승인기준	16
3.1.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16
3.2. GCF의 수탁기준 및 승인과정	18
3.3. AF의 직접접근과 수탁기준	23
4. 능력배양사업	27
4.1. 능력배양사업 정의	27
4.2. GCF 능력배양사업	29
4.3. 적응기금(AF)의 능력배양사업	35
4.4. 독일 Climate Finance Readiness Program	38

5. KOICA가 주도하는 기후자원 능력배양 사업	42
5.1. KOICA의 기후자원 능력배양 사업구상(안)	43
5.2. 향후 수원국 선정기준	47
5.3. 능력배양사업 실시 가이드라인	51
5.4. 능력배양사업 제시	52
6. 결론	56
6.1. 요약 및 시사점	56
참고문헌	59
부록	63

표 목차

표 1 녹색기후기금 설립경위	8
표 2 GCF 사업모델체계 핵심내용	9
표 3 수원국 주인의식 관련 GCF 운영지침	10
표 4 기금의 접근방식과 기능에 따른 기금 접근방식분류	15
표 5 다른 기금이나 기관이 사용한 환경적, 사회적 세이프가드	17
표 6 기본/특수 수탁기준의 범위와 목적	19
표 7 AF 개요	23
표 8 적응기금의 수탁기준	26
표 9 기후 재원 능력배양의 요소들	28
표 10 녹색기후기금 능력배양에 대한 지원 원칙	30
표 11 GCF 능력배양사업 최우선활동	30
표 12 GCF의 능력배양프로그램	32
표 13 GCF 능력배양기금 할당비율	34
표 14 적응기금 능력배양사업 핵심활동	35
표 15 적응기금의 능력배양사업 1단계 전체 개요	37
표 16 GIZ's Ready for Climate Finance의 접근법	39
표 17 GCFit의 세부내용	40
표 18 독일의 기후재원을 위한 능력배양사업	41
표 19 기후재원 능력배양사업 관련 필수 역량요소	43
표 20 기후위기지수 (Climate Risk Index: CRI)(1993년-2012년)	48
표 21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 소득유형별 분류	50
표 22 능력배양사업 중점협력국 분류	51
표 23 중점협력국 분류별 우선적 능력배양사업	53

그림 목차

그림 1 GCF 거버넌스 구조	12
그림 2 다자접근(Multilateral access)	13
그림 3 직접접근(Direct access)	14
그림 4 GCF 승인과정 전체 개요	20
그림 5 GCF 승인과정 1단계	21
그림 6 GCF 승인과정 2단계	22
그림 7 AF의 NIE 승인절차	25
그림 8 능력배양사업 도출과정	31
그림 9 녹색기후기금 직접접근을 위한 능력배양사업 제시(안)	44

부록 목차

부록 1 GCF NDA 혹은 국가접촉창구 지정한 나라	63
부록 2 AF의 NIE 승인기관	66

국문요약

녹색기후기금(GCF)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 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16)에서 결정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후재원으로 이 기금은 개도국의 직접접근(direct access)방식에 의해 전달된다. 개도국이 원활하게 기금에 접근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도국에 대한 역량 지원이 요구되는데 능력배양사업은 이처럼 개도국이 기금으로의 직접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수탁원칙 및 기준, 환경 및 사회적 세이프가드를 충족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에 이르러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금의 규모로 볼 때 개도국 스스로 이 기금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바램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능력배양사업은 추후 환경 ODA 사업에서 개도국이 원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13년 12월 개소한 녹색기후기금의 성격 파악과 함께 KOICA가 GCF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자 향후 환경 ODA 사업으로 능력배양사업을 제시하였다. GCF 사무국은 독일과 우리정부의 공여로 조성된 3천만불로 GCF 능력배양사업을 실시할 것임을 공표하였으나 이 예산은 개도국의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 과잉 수요는 전 세계 환경 ODA 사업을 통해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GCF 사무국의 능력배양사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과 별도로 ODA 사업으로의 기후변화 능력배양사업만을 다루었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GCF의 주요 원칙인 수원국 주인의식과, 주요 특징인 직접접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개도국이 기후재원에 직접접근 하기 위하여 이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승인기준(환경/사회세이프가드와 수탁기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후재원의 접근을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배양사업의 정의 및 필요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능력배양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KOICA가 주도하는 능력배양프로그램에 대한 밑그림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KOICA의 능력배양사업 구상에 관하여 KOICA가 능력배양사업을 수행할 때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나라에 대한 선정기준과 각 나라 상황에 적합한 능력배양사업의 예시를 제시하였는데 26개의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원국의 기후취약성, 개도국의 소득수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유무에 따라 26개국을 6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상황에 맞는 능력배양사업을 제시하였다. 능력배양사업은 개발도상국이 그 지역에 맞는 특정한 해결책을 찾도록 다양한 욕구에 맞춘 형식이어야 하고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서로 다른 수준의 능력배양사업을 제시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능력배양사업은 단순히 기금접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해당국가의 개발목표의 연장선상에서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에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후재원의 필요성 논의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녹색 ODA 개념을 수정, 보완하고 목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재원의 필요성과 개도국의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수요를 연계하여 고려해보면, ODA 사업으로의 기후변화 능력배양사업은 시의적절하며 향후 환경 ODA 사업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미래 개도국의 수요에 비해 현재 많은 양자원조기간이 이 사업에 대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KOICA가 이 사업을 개발/발전시킬 경우, GCF 및 기후재원에 있어서 주요 국제적인 플랫폼이 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 ODA 사업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브랜드를 개발, 이를 시행한다면 이 역시 KOICA 환경 ODA의 브랜드화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능력배양사업 제시안 중에 ‘이행기관의 선정 지원 및 이들의 승인기준 충족을 위한 역량개발’ 활동은 능력배양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나, 아직 GCF 사무국과 독일의 능력배양사업에서도 현재 크게 다루지 않는 영역이다. 따라서 KOICA가 이 부분에 있어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능력배양사업에 있어 집중과 개발이 요구된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특수한 지역에서의 단순한 자연 재해의 피해이기 보다는 전인류가 같이 해결해야하는 인류공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지역적으로 집중호우, 태풍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 재해에 노출이 더 클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경제적인 저발전, 사회적 자본 및 제도 부재 등으로 이미 심각한 빈곤과 개발 문제에 직면한 많은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이들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은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 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16)에서 결정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후재원이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선진국 및 국제사회의 노력은 그 전에도 있어왔다. 가령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이하 “GEF”)이나 적응기금(Adaptation Fund, 이하 “AF”),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 차원의 지원 등이 그것인데, GEF는 기후변화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협약 등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지원에 많은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AF는 규모가 작아 많은 개도국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한계 속에서 기존 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국제환경금융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기획재정부, 2013).

이에 새로운 기후기금 설립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첫 시작은 2009년 제 15차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총회(COP 15)에서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미국은 2020년까지 선진국의 연1,000억불 기후재원 조성과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듬해 열린 제 16차 칸쿤 기후변화협약총회(COP 16)에서 선진국들은 2010년-2012년 동안 3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재원(fast-start Finance)과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장기재원(long term finance)을

마련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모았다. 2011년, 제 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총회(COP 17)에서는 GCF 설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가 마련한 기금 설계방안(Governing Instrument) 채택 및 기금 설립을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는 이 총회에서 GCF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2년, 제 18차 도하 기후변화협약총회(COP 18)는 우리나라 인천 송도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하였다.

2011년 더반 COP 17에서 채택된 기금의 설계방안에 의하면, 녹색기후기금은 당사국총회(COP) 지도하에 독자적인 사무국과 과도수탁기관(interim trustee)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는 기금이다. GEF의 경우,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금의 승인 및 지출 과정에서 수탁자인 세계은행의 개입으로 인한 시간 및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그리고 과도한 영향력 행사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GCF는 GEF와 달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보다 효율적인 상황이 예상된다(정지원 외 2011, 정지원 외 2013).

녹색기후기금의 또 다른 큰 특징은 개도국의 기금에 대한 직접접근(direct access)이다. 이를 통해 기금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많은 수원국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원국 주인의식(country ownership)을 기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직접접근을 통하여 국가체제 및 계획의 일치를 도모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 기구의 개입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후기금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 개도국 국가들은 그들이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s)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야 하며 적합한 환경적/사회적 거버넌스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적절한 국가 기후 전략들이 수행되었음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는 많은 개도국이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접접근의 개념 및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도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개도국이 재원에 직접접근 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충분한 역량과 배경지식이 갖추어져야 함을 설명한다. 따라서 녹색기후기금의 직접접근이 가능해지면서, 개도국의 사업요청서 작성의 지원 또는 컨설팅 제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환경·기후분야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능력배양사업¹⁾은 개도국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그들 스스로

지속가능한, 이를테면 저탄소배출, 기후 회복탄력적인 개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증진시키는 능력배양사업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개도국의 녹색기후기금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섭씨 2도씨 이하로 유지하려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도국이 전략, 정책, 프로젝트-파이프라인 및 제도적으로 준비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통해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지출을 도울 수 있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직접접근은 수원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일수도, 동시에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효과적 사용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전일 수 있다. 따라서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능력배양은 기회를 얻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물은 GCF 펀드로의 직접접근 실현을 위한 개도국의 능력배양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향후 한국의 환경 ODA 활동으로서 능력배양사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GCF에 대한 소개와 GCF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 3장에서는 개도국이 기후재원에 직접접근 하기 위하여 이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승인기준(환경/사회세이프가드와 수탁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기후재원의 접근을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배양사업의 정의 및 필요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능력배양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2-4장에서 소개된 정보와 타기관의 능력배양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KOICA가 주도하는 능력배양 프로그램에 대한 밑그림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6장은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고 이러한 GCF 체제에 대비한 능력배양사업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였다.

1) Readiness Program은 최근 기후재원의 논의가 생겨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각국의 갖추어야 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한국용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용어가 없이 '능력배양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하게 현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물에는 '능력배양사업'이라는 용어로 이를 표기한다. 이는 일반적인 ODA 사업에서 개도국의 '능력배양,' '역량강화'라고 말하는 용어와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 말하는 능력배양사업은 개도국이 기후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1.2. ODA 사업으로의 기후변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필요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CF는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로 운영되는 세계 최대 기후변화 기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1년 OECD DAC회원국 ODA 총액이 1336억불인 것을 감안하면(한국수출입은행 경제기획본부, 2013), GCF는 GCF의 중요도와 기금의 규모에 있어서 기존의 여타 기금 및 조직과 비교하여 볼 때 압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기금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개도국의 수요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개도국 스스로 기금으로의 직접접근을 통해 기후재원을 받는 것은 개도국 최대목적이 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갖추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바이자, 환경 ODA 사업에 있어 그들이 공여국에게 바라는 수요일 수 있다. 환경 ODA 사업은 변화하는 국제적인 기후환경 시장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능력배양사업은 변화하는 기후환경 시장에 맞추어진, 또한 개도국의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환경 ODA 사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물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고, 개도국의 미래수요에 부응하고자, 녹색기후기금으로의 직접접근 실현을 위한 능력배양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KOICA의 환경 ODA 활동으로서 능력배양사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범위,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12월 개소한 녹색기후기금의 성격 파악과 함께 KOICA가 GCF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향후 환경 ODA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GCF 사무국은 독일과 우리정부와 공여로 구성된 3천만불로 GCF 능력배양 사업을 실시할 것임을 공표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기획재정부)는 본 사업의 주요 공여국이자,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GCF 사무국 능력배양사업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무상원조 기관이자,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으로서 KOICA는 대한민국정부와 협조하여 GCF 능력배양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GCF 사무국의 능력배양사업의 참여방안이 아닌 향후 ODA 사업으로 독자적인 기후변화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다루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GCF 사무국이 능력배양사업을 위해 확

보한 예산(3천만불의 능력배양 초기재원)은 개도국의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잉 수요는 전세계 환경 ODA 사업을 통해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GCF 사무국의 능력배양사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과 별도로 ODA 사업으로의 기후변화 능력배양 프로그램만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GCF의 직접접근과 함께 개도국이 GCF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요구되는 승인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2) GCF와 적응기금의 능력배양 사업안과 GIZ의 능력배양사업의 내용과 접근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현재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3) 이를 통해 KOICA가 앞으로 환경 ODA 활동으로서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마지막으로 일률적인 능력배양사업 제시에서 벗어나 수원국 각각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알맞은 KOICA의 향후 능력배양사업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KOICA가 능력배양사업을 수행할 때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나라에 대한 선정기준과 각 나라 상황에 적합한 능력배양사업의 예시를 26개의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원국의 기후취약성, 개도국의 소득수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유무에 따라 26개국을 분류하여 각 상황에 맞는 능력배양사업을 제시하였다.

2. GCF 개요 및 특징

2.1. GCF 개요

GCF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 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만든 국제금융기구이다. 기존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된 적응기금(AF),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이하 “CIFs”), 지구환경기금(GEF)과 같은 기금이 운용되고 있었으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기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2010년 제 16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사업 지원에 특화된 새로운 기금설립이 합의되었고, 이듬해 제 17차 당사국총회에서 GCF 설립 및 운영지침이 승인되었다. 아래 <표 1>는 GCF 설립경위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녹색기후기금 설립경위

구분	내용
COP 15, 2009 (코펜하겐)	- 미국은 2020년까지 선진국의 연1,000억불 기후재원 조성과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 설립을 제안
COP 16, 2010 (칸쿰)	- 선진국들은 2010년-2012년 동안 3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재원(fast-start finance)과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장기재원(long term finance)을 마련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합의(녹색기후기금 설립 결의) - 기금 설계를 위한 설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 구성 - 기금 출범 이후 3년 동안 세계은행이 기금 수탁자(trustee)로 역할 수행
COP 17, 2011 (더반)	- GCF 설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가 마련한 기금 설계방안(Governing Instrument) 채택 및 기금 설립을 결정 - 우리나라는 GCF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

GCF 사무국은 GCF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는데 GCF 이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동수로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의 수탁자는 국제적 수준의 신탁기준과 기금운용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하되, 초기 3년간 세계은행(World Bank)이 임시수탁자(interim trustee)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GCF 사업모델체계(Business Model Framework)는 이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서 기금의 구성 및 조직, 원칙, 지원 집중 분야, 기금활용 방식 등 기금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임소영, 2014), 제 4차 이사회(2013.6.)에서 논의된 사업모델체계에 대한 핵심내용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GCF 사업모델체계 핵심내용

사업모델체계 (Business Model Framework)	핵심내용
목표, 결과, 성과지표 (Objectives, Results and Performance Indicators)	-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을 통한 지속가능개발 극대화 - 수원국 주인의식이 사업모델의 핵심
수원국 주인의식(Country Ownership)	- 수원국 별 NDA 지정 또는 국가접촉창구 선정 - NDA는 기금의 사업 과정 관여 및 운영과정에 참여
재원 접근방법(Access Modalities)	- 국가주도적 접근활동에 기반한 접근법 - GCF 이행기구 승인방식 개발
재원 수단(Financial Instruments)	-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을 우선 활용 - 향후 다양한 수단 활용 가능
민간분야기구 (Private Sector Facility, PSF)	- 이사회가 PSF 감독 - 초기에는 이행기구,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투자 - 향후 직접투자 가능
조직과 구조 (Structure and Organization)	- 적응, 완화, PSF 로 구분 - 국가단위 전략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

이정석, 강희찬 (2013). p.9

2.2. 수원국 주인의식(Country Ownership)

GCF 이사회는 수원국 주인의식(country ownership)과 수원국 주도 접근방식(country-driven approach)을 GCF의 주요 원칙으로 정하였다(Liane Schalatek, Smita Nakhooda, 2013). 수원국 주인의식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담론에서 주요 원

칙 중 하나로 거론되는 원칙으로 국제사회는 국가 및 기관의 참여를 돕기 위해 수원국 주인의식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이에 따라 국제기금들도 이와 관련하여 수원국의 사업준비, 관리, 이행 등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였는데(GCF, 2013c), GEF의 Operational Focal Point, AF의 Designated Authority가 그 예이다(이정석, 강희찬, 2013). GCF는 수원국 주인의식을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국가정부와 다른 공공기관, 비공공기관 및 민간부분 등에 의한 이행을 통해 국가 프로그램개발 및 국가차원에서의 관리 및 감독에 최대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GCF, 2013c). 아래 <표 3> 는 기금 설계방안(Governing Instrument) 중에서 수원국 주인의식과 관련된 운영지침 조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GCF, 2013c).

표 3 수원국 주인의식 관련 GCF 운영지침

운영지침	핵심사항
제 3항	관련 이해관계자 및 기관 참여 촉진을 통한 국가 주도적 접근 방법 채택 및 국가차원에서 참여 강화
제 31항	기금접근에 대해 단순하고 개선된 직접접근방식 채택
제 36항	저탄소개발전략계획, NAMAs(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PAs(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NAPs(National Adaptation Plans)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국가 전략 및 계획을 반영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운영 촉진
제 46항	개도국은 국가권한을 가지는 기구인 국가대행기구(NDA) 선정 가능. NDA를 통해 이사회에 기금지원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제 53항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및 사업 승인절차를 통해 기금 공급. 작은 규모 사업의 경우 승인절차 간소화

GCF의 경우, 개도국의 국가대행기구(National Designated Authority, 이하 “NDA”)를 지정을 통해 수원국 주도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즉, 국가주도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수원국은 국제기금의 현지 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NDA를 지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기금을 위한 주요 연락지점의 역할을 맡으며 기금에 대한 제안서가 해당 국가의 기후와 발전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NDA는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방식을 이행할 국가이행기구(National Implementing Entity, 이하

"NIE")를 제안하거나, 국가 기후전략 및 계획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GCF의 지원 대상으로 이사회에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원국 주인의식에 관한 논의는 개도국의 동의절차(no-objection procedure)를 통해서도 설명되는데, 동의절차는 기금에 추천하는 사업요청서 내용이 국가 기후변화 전략 및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절차이다. 개도국의 동의는 NDA가 동의서한을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동의서한은 개도국 정부가 사업내용이 국가 우선순위에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해당 사업요청서를 승인한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GCF는 해당 국가의 NDA가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전략과 부합한다고 판단, 동의한 제안서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으로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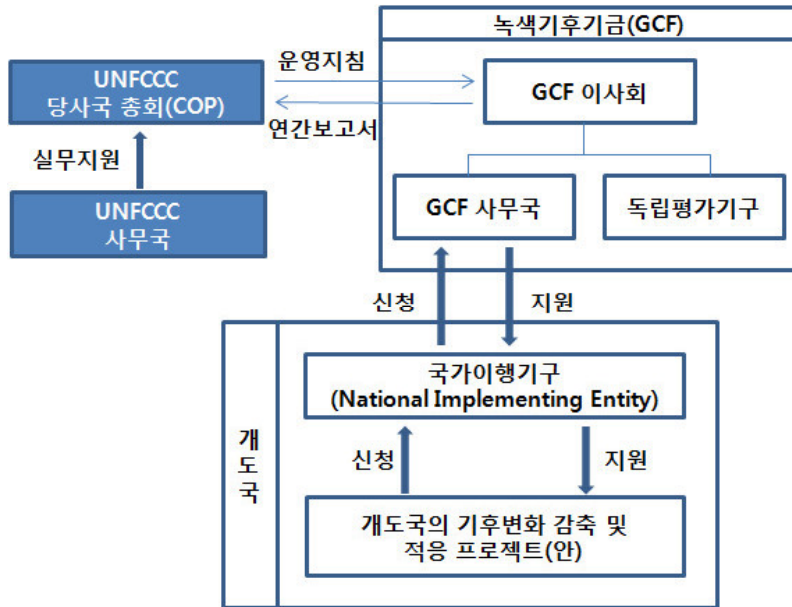
GCF 사무국은 NDA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GCF, 2014d).

- 주기적으로 국가 전략프로그램 개발 및 GCF의 선호활동 및 선호하는 이행기관 파악 (전략프로그램 개발은 선택사항이지만 이는 GCF와의 활동 연계를 위한 기본사항임)
- 기금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행기관에 대한 지지표명 및 지명
- GCF로부터 기금을 받기위한 프로포잘 개발에 참여
- 사무국과 함께 프로젝트 컨셉 사전스크린에 참여(컨셉 제출은 선택)
- 국가의 우선순위와 필요에 맞지 않는 프로포잘에 대해 반대의견 개진
- 이사회 결정 결과에 대해 정통해야함
- 프로그램 이행과 진행사항에 대한 파악

개도국은 자국의 기후변화적응 및 감축 전략에 따라 사무국에 직접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승인된 NIE를 통해 펀드가 신청, 배분, 조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설명된 GCF 조직과 역할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GCF 거버넌스 구조 (기획재정부, 2012)



2.3. 직접접근(Direct Ac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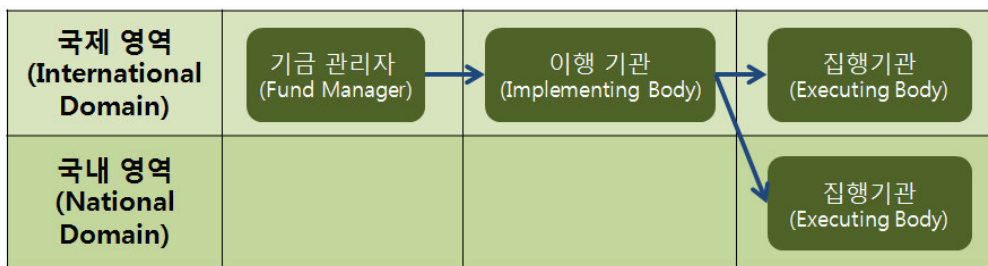
개도국은 2.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NDA 지정을 통해 수원국 주도적인 사업을 하게 되며 이 NDA는 이행기관에 대한 지지표명 및 지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 기관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면 이행기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금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direct access)을 허용한 것은 GCF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이는 수원국 주도 하에 기금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여러 포괄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시키려는 취지이다(정지원 외, 2013). 본 장에서는 GCF의 특징 중 하나인 직접접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자원을 갖추고 있는 반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원과 능력 부족, 그리고 사회의 불안정의 이유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한계는 취약성이 높은 대상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며, 이들은 종종 정치·사회·경제적 장벽들로 인하여 현재 국제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정자원에 접근하여 해

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수록 기후재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이 증가된다는 인식이 현재는 상당부분 공유되었다. 직접접근은 이런 국제적인 논의 속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직접접근은 지금까지 다자간/세계적/양자간 기관들에 의해 행해진 프로젝트 촉진/관리 기능을 각 국가의 독립체에게 이전한 것을 의미한다(UNDP, 2011).

다자접근(multilateral access)은 기금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것이 모든 다자간/국제 기구 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집행은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지거나 다자간 기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한다. 이런 배치 하에서는 국가 시스템보다는 다자기구시스템의 사용이 선호되고 국가별 예산 시스템의 외부에서 대부분의 지출이 이루어진다. GEF와 CIFs를 포함한 많은 국제공공 기후기금이 이 모델을 사용한다(UNDP,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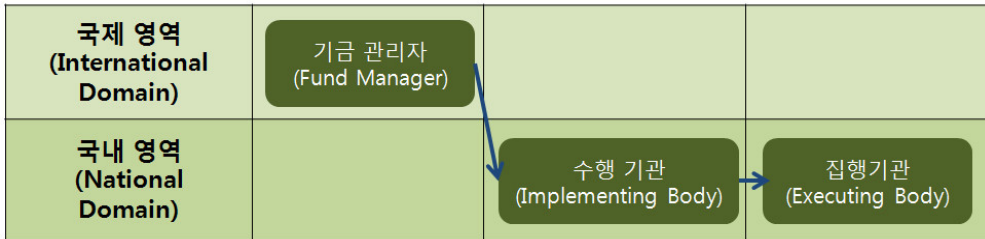
그림 2 다자접근(Multilateral access)



UNDP (2011)

직접접근은 2007년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AF의 운영을 결정함에 있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자격을 갖춘 당사국이 AF에 사업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정부가 선정한 기관(entities)이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AF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기금에 직접 접근한다는 것은 펀딩의 감독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기능인 이행과 집행을 다자기구나 국외 기관이 아닌, 해당국의 국내 기관들이 담당함을 의미하며 직접접근의 목적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보장하고, 감독권과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금 운영에 대한 수원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그림 3 직접접근(Direct access)



UNDP (2011)

AF에서 수원국 정부는 국가이행기구(National Implementing Entity, 이하 “NIE”), 지역이행기구(Regional Implementing Entity, 이하 “RIE”)나 다자이행기구(Multilateral Implementing Entity, 이하 “MIE”)를 통해 펀드에 접근할 수 있다. AF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entities)은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AF 이사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원국 정부가 NIE를 통하기로 결정하고 AF 이사회가 승인한다면, 직접접근 형태로 진행된다. 해당국의 정부부처나 기후기금관련기관, 또는 NGO와 같은 독립된 기관 등이 NIE가 될 수 있는데 수원국 당 하나의 NIE만을 지정할 수 있다. 각 정부는 컨설팅과정을 거쳐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선정하고 NIE를 통해 AF 이사회에 기금신청을 하는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승인은 검토과정을 거쳐 이사회가 결정한다. 현재(2014.7. 기준) 16개의 NIE가 승인²⁾되었으며 많은 지원기관이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s)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되었다.

GCF 구조에서 직접접근은 개도국 혹은 수원국이 자국 내에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이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이 다른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금을 수령하고 지출하는 권한을 갖는 형태를 의미한다(정지원 외, 2011). GCF 운영지침에 의하면 이사회가 승인한 국가, 지역, 국제 이행기구(National, Regional, International Implementing Entities, 각각 NIEs, RIEs, IIEs)를 통해 기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원국은 스스로 접근법과 이행주체를 선택할 수 있다. 수원국은 제안요청서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국가대행기관(NDA)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된 NDA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 기후 전략 및 계획과 부합하는 제안서를 선정하여 이사회

2) <https://adaptation-fund.org/national-implementing-entities> <부록 2> 참조

에 추천한다.

수원국은 자격을 갖춘 준국가(subnational), 국가 및 지역 이행기구를 선정하는 권한을 갖고며 이들이 승인을 받으면 재원은 이 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기금을 전달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원국은 UN, 다자개발은행, 국제금융기구 등 승인된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 기금을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제적접근(international access)이며 이는 직접접근의 반대개념인 간접접근의 예이다.

직접접근은 승인된 국가이행기관(NIEs)에 의해 기금이 이행되는 반면에 국제 및 지역 접근법(international or regional access)은 UN, 다자개발은행(MDBs),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IFIs”) 등 승인을 받은 국제 또는 지역기관에 의해 기금이 이행되는 것을 말한다. GCF는 궁극적으로는 직접 접근을 추진하되, 기금 초기에 직접접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국제(혹은 지역) 접근법을 따르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일반적으로 이행기관들(Implementing Entities, 이하 “IEs”)은 GCF로부터 기금을 받는 프로그램들의 관리의 역할을 하는데, 기금 신청을 위한 제안서의 준비와 시작, 이행 과정의 관리와 검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집행기관(Executing Entities, 이하 “EEs”)은 펀드를 받는 최종실체로 프로젝트 관리 및 집행 프로젝트 소유자 혹은 소유기관으로 그 프로젝트의 이행과 집행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상기 서술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기금의 접근방식과 기능에 따른 기금 접근방식분류

접근법	기금관리			이행	집행
	전략적 기금관리	재무중개	국가조정		
직접(direct)	펀드(사무국)	-	국가지정기구 (NDA)	국가이행기관 (NIEs)	집행기관 (EEs)
국제 (international)	펀드(사무국)	-	국가지정기구 (NDA)	국제이행기관 (IIEs)	집행기관 (EEs)

GCF (2013d)

3. 이행기관의 승인기준

이행기관이 사무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금이 요구하는 수탁원칙 및 기준, 환경/사회 세이프가드(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이하 “ESS”)가 충족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2014년 5월 7차 이사회 이후 제시된 잠정적인 GCF의 ESS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와 함께 제시된 GCF 이행기관 승인기준 역시 살펴보았다. 또한 직접접근의 원칙하에 제공된 최초의 기후 기금인 적응기금의 승인기준을 살펴보았다. 직접접근의 원칙하에 제공된 선행기관의 승인기준 소개를 통하여 향후 GCF의 이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준비와 이를 위한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3.1. 환경/사회 세이프가드³⁾

기금 공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환경과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기금활동을 위하여, 수탁기준, 건전한 재정적 관리와 함께 ESS는 이행기관의 승인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많은 금융 및 개발기관들, 가령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 GEF 등은 ESS 정책을 보유하고 개발시키고 있는데 GCF 설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 역시 일반적으로 GCF의 지원을 받는 활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ESS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아래의 표는 이들 기관들의 ESS를 요약한 것이다. 개발 중인 GCF 고유의 ESS는 이들의 ESS를 근간으로 수립될 전망이다(GCF, 2013b).

3) 본 장은 GCF(2013b)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표 5 다른 기금이나 기관이 사용한 환경적, 사회적 세이프가드

World Bank	IFC	GEF	FCPF (능력배양펀드)
환경평가	환경적/사회적 평가와 관리 시스템	환경적 사회적 영향 평가	환경평가
천역 서식지들	노동과 근로 환경	천연서식지 보호	천연 서식지
해충 관리	환경오염 방지 및 금지	비자발적인 재식민	숲
토착원주민 (indigenous people)	지역사회 보건, 안전과 보안	토착원주민	비자발적인 재식민
물리적 문화적 자원들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인 재식민	물리적 문화적 자원	토착원주민
비자발적인 재식민 (resettlement)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해충 관리	물리적 문화적 자원들
숲	토착원주민	댐의 안전	국제적인 수로에 관련된 프로젝트들
댐의 안전	문화유산	책임과 불만처리 시스템	분쟁지역의 프로젝트들

GCF (2013b),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12). Performance Standards on social and Environmental Substantiality. 재인용

2014년 제 6차 이사회는 GCF의 ESS에 관하여 GCF는 잠정적으로(GCF 자체적인 ESS가 완성될 때까지) IFC의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 이하 “PS”)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이 IFC의 PS는 GCF의 ESS의 근간이 될 것이다. ESS의 잠정안은 환경적, 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기금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실행 기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구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 ESS는 각각의 프로젝트들 및 프로그램 내부의 활동들과 같은 그 기금의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젝트들에 적용되게 된다.

IFC의 PS은 크게 8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i) 환경적/사회적 위험과 영향의 평가 및 관리, ii) 노동과 근로조건, iii) 자원효율성과 오염방지, iv) 지역사회 보건, 안전, 보안, v) 토지 취득과 비자발적인 재식민(resettlement), vi) 생물다양성 보존

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vii) 토착원주민, viii) 문화유산 등이 그것이다.

그 기금의 임시 ESS의 적용은 한 사이즈로 모든 사례에 적용하는 접근하지 않는 위험 중심의 접근방법 (Scaled Risk-Based Approach, 이하 “SRBA”)으로 실행되게 되는데 이 접근법은 또한 그 기금에 환경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각각의 프로젝트 수준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 펀드에 승인된 IEs와 중개기관들은 펀딩 제안서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잠재적인 환경적 사회적 위험 그리고/또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출된 기금 제안서들은 아래의 카테고리들로 분류가능하다

- (a) Category A: 잠재적으로 중요하고 부정적인 환경적 그리고/또는 사회적 위험이나 다양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끼치는 활동들
- (b) Category B: 잠재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환경적 그리고/또는 사회적 위험이나 수가 적고, 일반적으로 장소 특정적이며, 되돌릴 수 있고, 감축 측정에 의해 이미 다뤄진 영향;
- (C) Category C: 최소의 또는 아무런 부정적인 환경적 사회적 위험 또는 영향이 없는 활동들;

GCF 이사회는 임시 ESS에 기금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적용할 정식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승인, 채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도국이 처한 상황과 현재의 역량에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이사회가 개발한 방식을 바탕으로 수원국 스스로가 기금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충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GCF와 공여국은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정지원 외, 2011).

3.2. GCF의 수탁기준 및 승인과정

2013년 10월 이사회는 승인과정을 설명하는 지침프레임워크(guiding framework)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수렴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5월 GCF는 수탁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초기지침프레임워크(initial guiding framework)를 제공하였다.

아래의 <표 6>는 GCF NIE로 승인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수탁기준을 설명한다. 기본 수탁기준(basic fiduciary criteria)은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그 기관들이 완전히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행정적/재무관리적인 능력과 투명성 및 책임성)들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인 수탁기준은 재무관리와 행정에서 핵심적인 기능들, 거버넌스, 물품조달과정과 체계, 투명성, 전체 프로젝트 사이클의 관리 등이 있으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수탁기준과 각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특수 수탁기준(specialized fiduciary criteria)은 승인을 요청하는 그 기관에 할당되는 역할과 임무의 범위에 따라 기금이 요청하는 특정한 기관별 역량과 자원에 관한 것이다. 가령 프로젝트 관리 역량, 보조금이나 기금 할당 메커니즘, 블렌딩(blending)론이나 온렌딩(on-lending)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수탁기준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기준(각 항목을 모두 충족)이라면 특수한 수탁기준은 그 중개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더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들이라 할 수 있다. 특수 수탁기준은 여러 재정 수단을 사용한,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기반의 기금 제안서를 만들고, 제안하고 관리하고 완전히 이행하는 역량과 관련된 기능들이다. 재정 수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역량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며 이 때 기금의 투자 프레임워크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표 6 기본/특수 수탁기준의 범위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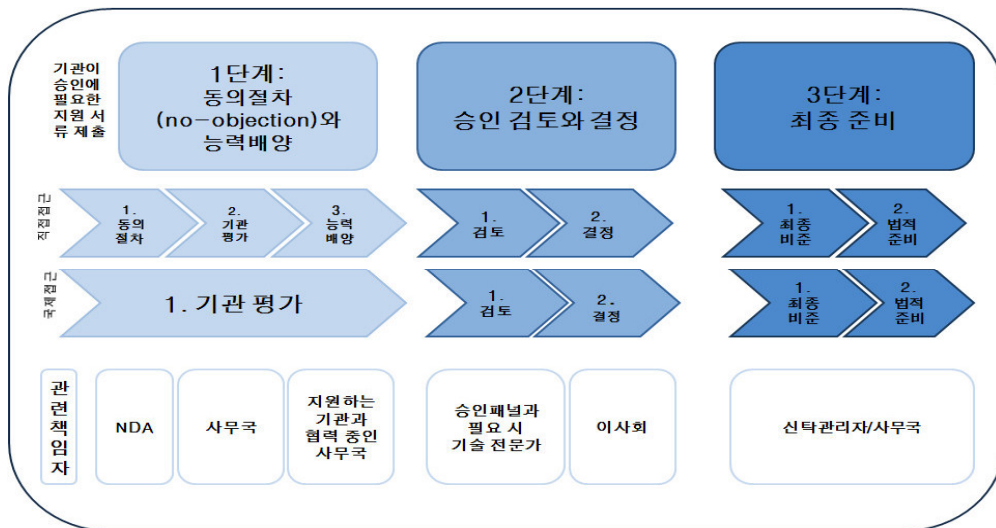
	목적	범위
기본 수탁 기준	주요 행정/ 재정 역량	· 일반적인 관리와 행정 능력 · 재정관리 및 회계 · 내/외부 회계감사 · 조정 프레임워크 · 조달
	투명성 및 책임	· 이익의 충돌내용 공개 · 윤리 코드 · 재정상의 잘못된 집행이나 다른 위법행위를 다루거나 방지할 능력 · 조사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준비 및 평가(컨셉부터 기금 지원서까지) · 프로젝트 실행, 감독 및 조정 · 모니터링과 평가 · 프로젝트 위기관리(project-at-risk) 시스템 및 관련된 프로젝트 위험

	목적	범위
특수수탁 기준	기금 수여 (와/또는) 기금 분배 메커니즘	· 기금 수여 과정 · 재정 자원의 투명한 분배 · 수혜자의 정보와 결과에 대한 열린 접근(public access) · 다자기구 펀딩에 관한 좋은 평판(예. 공인된 공공 지출 리뷰를 통해)
	on-lending (간접대출 제도)와 blending (블렌딩론)	· 적절한 등록 과/또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재정 감독기구나 규제기관이 수여한 면허 · 다른 세계적인 또는 다자간 자원을 블렌딩 및 온렌딩한 기존의 경험과 역량 · 신용도 · 근면 정책, 과정과 절차 · 재정 자원 관리(중개기관의 대출 포트폴리오 분석을 포함) · 수혜자의 정보와 결과에 대한 열린 접근(public access) · 투자 관리, 정책 및 시스템(포트폴리오 관리와 관련된 부분 포함) ·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기금의 이익을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능력 · 재정 위험 관리(자산에 대한 법적 책임관리 포함) · 관리 및 기관별 연결과 부담(재무부처와 운영기관 간의 관계를 포함)

GCF (2014c)

GCF 이행기관 승인은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검토하게 되며 사무국이 승인패널(accreditation panel)의 자문을 받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기관들은 절차에 따라 그들의 지원서를 제출한다. 지원 기관들은 또한 가능하다면 그 나라 NDA 혹은 국가접촉창구가 반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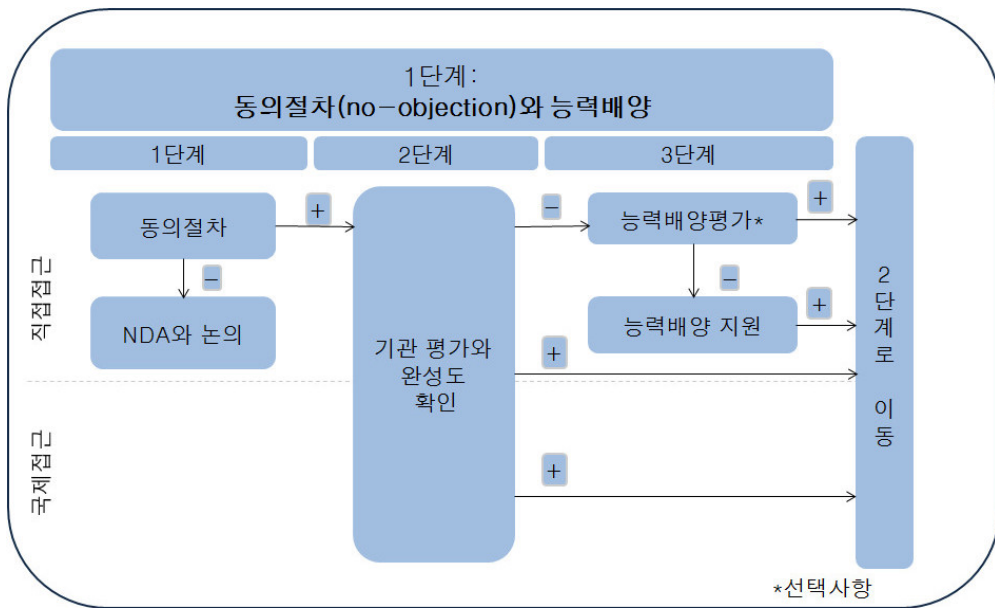
그림 4 GCF 승인과정 전체 개요



GCF (2014c)

위의 <그림 4>은 직접접근⁴⁾과 국제접근⁵⁾ 경우의 GCF의 승인 절차와 결정과정을 한눈에 보여준다. GCF 이행기관의 승인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동의절차와 능력배양, 승인 검토와 결정, 그리고 최종준비 과정을 통해 최종승인이 이루어진다.

그림 5 GCF 승인과정 1단계



GCF (2014c)

상기 <그림 5>는 승인과정의 1단계인 동의절차와 능력배양 단계를 보여준다. 1단계의 목적은 지원 기관이 충분한 준비를 갖췄는지 그리고 승인과정의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기관의 역량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직접접근의 경우는 2개의 의무 단계(NDA의 동의를 받는 동의절차와 기관평가)와 1개의 선택단계(능력배양) 단계가 적용되나 반면에 국제접근의 경우는 오직 기관평가만 이루어진다.

NDA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 기관에 대해 기관평가와 완성도 확인에 들어가는데 기관평가는 기관의 법적상태, 소유하고 있는 라이선스, 기관의 실적, 관련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인한다. 또한 후보기관의 능력배양수준도 점검하게 되는데 기본수탁기준과 특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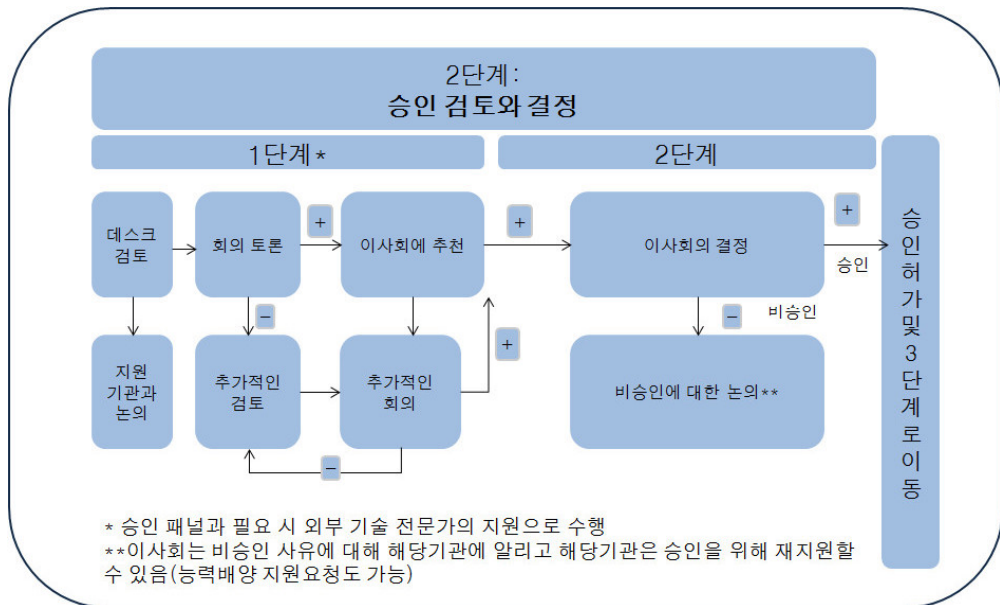
4) 지방정부, 국가 혹은 지역차원의 기관이 이행기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5) UN, MDBs, 국제금융기구 및 지역기구 등이 지원하는 이행기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탁기준, 그리고 GCF의 ESS를 잘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능력정도를 확인한다.

후보기관 조건이 승인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후보기관은 그 나라에 맞는 능력배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림 6 GCF 승인과정 2단계



GCF (2014c)

2단계는 관련 기관이 제출한 지원서를 해당 기금의 사용에 적합성의 관점에서 실제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때 승인 패널과 필요 시 외부 기술 전문가의 지원으로 수행하며 이사회는 비승인 사유에 대해 해당기관에 알리고 해당기관은 승인을 위해 재지원할 수 있다.

3단계는 2단계의 성공적인 완료에 따라 지원 기관과 GCF 간 공식적인 협약과 최종승인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승인된 기관에 기금 지불과 관련된 교육 및 법적 준비사항 등의 완료를 말한다.

3.3. AF의 직접접근과 수탁기준

적응기금은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관련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재정수단이다. 적응기금은 적응기금이사회(Adaptation Fund Board)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되고 GEF를 사무국으로 세계은행이 과도수탁을 담당하고 있다⁶⁾.

적응기금은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로부터의 수익, 국가들의 공여, 투자수입금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CDM의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이하 “CER”) 판매수익의 2%가 적응기금으로 조성된다.

그밖에 적응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AF 개요

구분	내용
개요	외부 재무회계감사 재무 관리 및 통제 프레임워크 재무상황 공개(financial disclosure) 윤리 코드 내부 회계감사
집행기구	WB를 임시 수탁기관으로 하는 AF 이사회
규모	~USD 185.3백만 (2012.12.27.까지이며, 현재까지의 현금 이전은 제외)
기금수원국	2013: Argentina, Rwanda, Guatemala, 2012: Argentina, Cambodia, Colombia, Djibouti, Egypt, Jamaica, Lebanon, Mauritania, Papua New Guinea, Sri Lanka 2011: Georgia, Tanzania, Cook Islands, Uruguay, Samoa, Madagascar, Mauritius, Mongolia, Maldives, Turkmenistan, Ecuador, Eritrea, Solomon Islands 2010: Nicaragua, Pakistan, Senegal, Honduras
날짜	2001년에 설립 2009.2.9.부터 운영

FS-UNEP Collaborating Centre (2014)

6) <https://adaptation-fund.org/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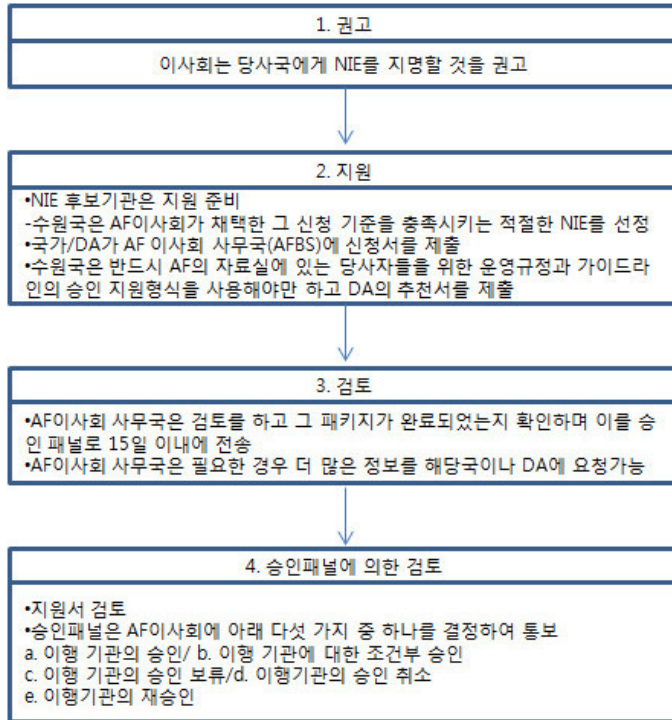
AF는 직접접근의 원칙하에 제공된 최초의 기후 기금이다. 직접접근은 적응기금의 주요 혁신사항으로 개도국들이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다자기관을 통해 개도국이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기금에 직접 접근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AF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 수원국 정부는 그들의 지정권한기관(Designated Authority, 이하 “DA”)를 통해 실행기관을 추천하고 AF 이사회에 승인을 받기 위한 지원을 한다. DA는 각 개도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이는 적응기금과의 접촉창구기능을 하는 그 나라의 정부대표를 의미한다⁷⁾. 직접접근은 국가이행기관(National Implementing Entities)와 지역이행기관(Regional Implementing Entities)를 위한 신청승인을 지지하고, 적응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서를 AF 이사회에 보내기 전 확인 및 프로젝트/프로그램 제안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신청국은 AF에 단 하나의 NIE를 제시할 수 있다. 해당기구는 합법적인 기관이어야 하며 재무부처 또는 환경부처에 가까운 공공영역의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기후재정에만 국한된 기관일 수도 있다. NIE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기구들은 DA의 지지를 받아야만 하며 RIE의 경우, 그 지역의 해당국 중 최소 2개 이상의 DA로부터 그 지지서한을 받아야만 한다. 승인된 NIE를 갖는 대신, 다자이행기구들(MIEs)을 통하여 AF 이사회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신청국에 의해 선정된 MIE는 모든 재무사항, 모니터링,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AF가 승인한 MIEs는 UNDP, UNEP와 같은 UN기구를 포함하여 여러 개발은행들(ADB, IDB, WB)이 있다.

7) GCF의 NDA와 같은 개념임.

그림 7 AF의 NIE 승인절차



상기그림은 AF의 승인절차⁸⁾를 도식화한 것이다. 수원국(혹은 DA)에 의해 신청서는 AF 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승인패넬로 전달되고, 승인패넬은 지원서를 검토하여 승인, 조건부승인, 보류, 취소, 재승인 중 하나의 결정을 하여 통보하게 된다.

NIE 지원과정에서 지원 기관은 반드시 수탁기준에 맞는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들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는 역량 역시 증명해야 한다. AF를 구성하는 교토의정서의 당사국들은 반드시 “국제 수탁기준의 채택을 포함하여 철저한 재무관리”를 실행할 것을 합의했고 7차 회의에서 AF 이사회는 기금의 이행기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수탁 기준을 채택했다. 22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이러한 수탁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및 사회 정책을 승인했다. 승인된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수탁 기준은 아래와 같다⁹⁾.

8) AF의 NIE 승인 툴킷(toolkit)의 내용을 저자가 그림으로 작성한 것임

<http://www.adaptation-fund.org/sites/default/files/Accreditation%20Toolkit%20English.pdf>

9) <https://www.adaptation-fund.org/page/accreditation-process> 를 정리·요약하였음

표 8 적응기금의 수탁기준

구분	무결점의 재무상태와 관리상태	기관의 역량	투명성과 자체조사 능력
내용	· AF 이사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 · 거래사항과 잔고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독립회사 또는 기관이 기간별로 회계감사 수행 · 시간 계획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지출 · 미래지향적인 재무 계획과 예산 작성	· 투명하게 실행되도록 경쟁을 포함하여 조달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식별, 형성하고 검토하는 능력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환경, 사회적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를 다룰 추정방법의 채택 등) ·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실행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능력(하위단계의 수혜자를 관리하는 능력 및 지원과 이행을 전달하고 이행하는 능력) ·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환경/사회적 위험 측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	· 재정의 잘못된 집행 및 다른 형태의 위법 행위를 다룰 수 있는 능력 · 프로젝트 / 프로그램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해악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AF의 최소 승인 기준은 재무상태와 관리상태, 기관역량 그리고 기관투명성과 자체조사 능력 등이다. 이에 지원 기구들은 적절한 기술, 재무성과를 입증해서 그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자원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4. 능력배양사업

능력배양사업은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제기후 금융에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2013년 제3차 GCF 이사회에서 개도국의 능력배양(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기금의 접근이 취약한 개도국에게 저탄소 및 기후변화 복원력이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자국 내 역량을 배양하고, 기금으로의 직접접근인 접근을 가능하도록 세부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GCF의 운영지침은 개도국의 대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예시하고 있는데(GCF, 2011), 이는 i) 수원국의 기존의 저배출개발전략 및 계획, 개도국의 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이하 “NAMAs”),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s, 이하 “NAPs”), 국가적응행동계획(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이하 “NAPAs”) 등의 계획 지원 및 내용강화, ii) 수원국의 조정능력 증진을 위한 수원국의 제도 강화, iii) 수원국이 펀드로의 직접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원국 기관의 수탁기준 및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지원 등이 그것이다.

4.1. 능력배양사업 정의

기후재원에 대한 “능력배양(Readiness)”은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를 위한 능력배양과 같은 기후재원의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상대적으로 새로운 용어로(UNDP, 2012), 일반적으로 지역, 국가, 지방 수준에서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행동을 위한 재정적 자원에 접근/분배/할당/이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이의 사용과 결과의 모니터링 및 보고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능력배양은 아래의 것들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UNDP, 2011).

-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위한 자원들을 할당받기 위한 범분야적인 정책 설계와 조정 능력 및 전문지식 강화
- 자원들이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기존의 재정수단, 국가재정(세제) 접근, 과정과 수단을 강화하거나 새로 창조
- 국제 재정자원의 흐름 조정 및 공여자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식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기후재원에 대한 능력배양(Readiness for climate finance)은 해당 국가들이 국가발전의 우선순위와 MDGs의 성취와 연동되고 이들을 더욱 촉진하며 기후재원을 계획하고, 접근하고, 전달받으며,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UNDP, 2012).

표 9 기후 자원 능력배양의 요소들

재정 계획	재원에 접근	자원 전달	모니터링, 보고 & 인준
• 수요와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투자의 장벽들을 식별 • 정책-믹스와 재정 자원들을 식별	• 재원에 직접 접근 • 재정자원들을 혼합하고 병합 •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재원에 접근하기 위한 분야를 넘나드는 시도	•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이행 및 실행 • 전문지식과 기술을 로컬차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고려 • 이행 조정	• 모니터링, 보고, 흐름확인 • 성취에 기반한 지급

UNDP (2012)

능력배양 정의에는 상기 <표 9>에서 보듯이 4가지의 주요 요소들이 있는데 이는 i) 재원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능력, ii) 국가 수준에서 여러 다른 형태의 재원에 접근하는 능력, iii) 재원을 전달하고 이행/실행하는 능력, iv) 재정 지출 및 관련된 결과와 전환의 영향을 모니터링, 보고, 인준하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즉 UNDP의 정의에 의하면 능력배양사업은 재원의 계획부터 이행, 실행,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기후재원의 모든 사이클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 GCF 능력배양사업¹⁰⁾

우리나라는 사무국 유치과정에서 개도국 능력배양사업에 총4천만불('14-'17년간) 출연할 것을 공약하였다. GCF 6차 이사회(2014년 2월)는 독일(15백만유로), 한국(1천만불)의 공여로 2014년도 3천만불의 능력배양 초기재원 조성될 것을 예상, 능력배양지원 우선순위를 채택하고 현황 조사 및 개도국 수요파악을 시작할 것에 합의하였다(기획재정부, 2014). 또한 이 이사회는 GCF 사무국에 해당 국가들과 당사자들의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되는 지원 요구들에 기반을 두어 필요한 능력배양 활동을 정리하라고 요청했고, 이런 활동들이 해당국가들, 기존의 이니셔티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간목표와 그 형식을 포함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기존의 이니셔티브들과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옵션들을 만들도록 했다(GCF, 2014b).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관한 정부기관과 이사회 결정에 따르면, GCF가 제공하는 능력배양사업과 사전준비 지원(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GCF, 2013d).

- (a) 저탄소배출, 기후 회복탄력적인 개발 전략 및 계획에 대한 준비 및 강화
- (b) 국가 조정을 포함한 수혜국 내 기관의 역량 강화
- (c) 수원국들이 기금의 신탁 규정과 기준 및 환경/ 사회 세이프가드를 충족시키도록 도와 기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능력배양 지원에 대한 원칙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다(GCF, 2014).

10) 본 장은 현재(2014년 8월)기준, GCF 사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GCF의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정보(능력배양 지원에 대한 원칙, 가이드라인 등)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GCF의 능력배양사업 방침은 향후 GCF 이사회의 결정과 사무국 상황에 따라 사업의 방향, 예산, 구체적 사항 등은 바뀔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를 수 있다.

표 10 녹색기후기금 능력배양에 대한 지원 원칙

- a)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촉진하고 수원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함
- b) 외부 전문가나 국제기관에 과도하게 의지하기보다 수원국 내부에서 지속되는 기관의 역량 육성을 목표로 하여 협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방식으로 함
- c) 서로 다른 국가들의 특성과 다양한 필요에 따른 유연함
- d) 결과와 이전 실행을 통한 배움에 기반을 두어 계속적으로 적응하고 개선함
- e) 기존의 이니셔티브와 지원 자원들을 보완하면서 일관성 유지
- f) 공공과 민간 양 영역의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포함
- g) 성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유의함
- h) 투명성을 유지

현재 GCF 능력배양사업 예산은 개도국의 능력배양사업 필요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므로 GCF 사무국은 능력배양사업의 필요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 2014년 2월 제 6차 이사회의 결정은 4개의 최우선적인 능력배양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표 11>과 같다(GCF, 2014)¹¹⁾.

표 11 GCF 능력배양사업 최우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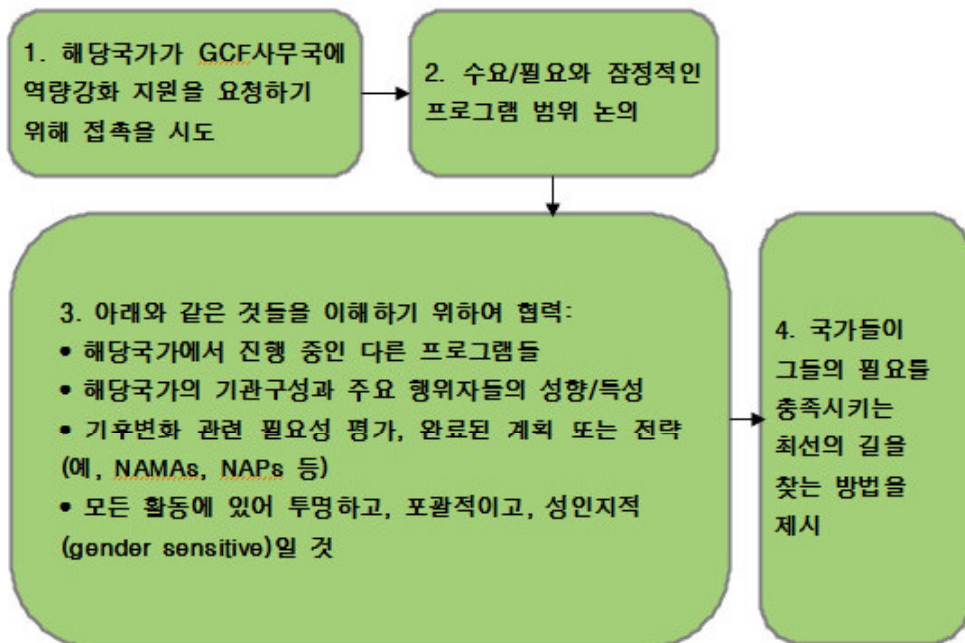
구분	내용
1) NDA 또는 국가접촉창구의 설립	- 국가와 기금 간의 점점역할과 저탄소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NDA가 필요 - 만약 그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사무국은 접촉창구에 해당국이 권한을 주도하도록 도움
2) 전략적 프레임워크	- 해당국가가 GCF와 소통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NDA나 접촉창구와 함께 지원 -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관계된 기존의 정책과 전략 문서들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수원국의 기존의 저배출개발전략 및 계획, NAMAs, NAPs, NAPAs 등의 계획 지원 및 내용강화를 포함
3) 중개자 또는 이행기구의 선정	- 기금으로의 접근 과정은 두 단계로 구성 i) 먼저 사무국은 그 NDA나 접촉창구를 통해서 최소한 하나의 적절한 중개자나 이행기구(sub-national, national, regional, international 수준 중)를 선택한 뒤 이 기구의 능력을 강화함 ii) 이사회가 승인을 하면, 사무국은 수원국의 제안된 중개자나 이행기구가 그 기금의 승인을 받도록 준비과정을 도움
4)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제안의 초기 파이프라인 구축	- GCF는 우선적인 프로그램/프로젝트들이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도록 이들의 제안서 개발비용 등에 보조금(readiness grants)을 제공 - 기금을 받기 위한 제안서들은 다양한 수원국 내의 공공, 민간, 비영리기구 등의 실행 기구들(Executing Entities, 이하 EEs)로부터 나옴. 이사회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승인하면 EE가 기금을 받고 실행을 관리하는 주체가 됨

11) <표 11>은 (GCF, 2014)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GCF 사무국은 4가지 우선순위 활동들은 순차적이거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금은 위의 네 가지 사항 중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어떤 것이든 기꺼이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무국은 5월 말 능력배양사업 개발에 착수할 것이며¹²⁾ 2014년 5월 10일 전까지 받은 모든 정보들을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GCF 사무국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능력배양사업은 우선 해당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해당국가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개도국의 요청이 있는 나라와 GCF 사무국은 그 나라의 능력배양 수요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한 뒤 각 개도국에게 필요한 최선의 길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8 능력배양사업 도출과정



GCF (2014e)

12) 2014년 GCF 5월 뉴스레터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

지금까지 14개 국가¹³⁾가 능력배양사업을 요청하였고, GCF 사무국은 정부 대표들과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그들의 필요와 기회를 이해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까지 받은 요청들은 아래에 대한 지원요청이다.

- 효율적인 NDA 조직의 설립
- GCF 관련된 전략적인 우선순위 개발
- 기금의 투자 기준에 맞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개발
- 국내 기관들이 승인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요청사항들을 이해하도록 도움

능력배양사업의 기금의 전달형태(delivery modalities)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 수원국의 요청에 의해, 둘째, 사무국 국가프로그램(Secretariat's Country Programming Division)의 주도 하에, 셋째, 가능한 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현지 기반 기술 지원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기금의 능력배양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적인 기후변화 파트너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아래의 표는 GCF가 제시한 향후 능력배양프로그램의 대략적인 내용과 예산이다(GCF, 2014).

표 12 GCF의 능력배양프로그램

초기 조사단 파견 및 지원프로그램 성격 결정	
조건	수원국 요청 시
내용	- 4개의 우선활동 중에 적합한 능력배양 프로그램 결정
	- 기술적 지원을 할 국내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
국가별 잠정예산	(1명의 사무국 직원+2명의 기금 컨설턴트)X국가별 10일= 총 60,000USD
비고	국가의 크기와 기금과의 장래 관계를 고려하여 예산은 유동적임

13) 안티과와 바브다, 벨리즈, 쿡 제도, 도미니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말리, 모리셔스,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상투메 프린시페, 르완다.

http://www.gcfund.org/fileadmin/00_customer/documents/Readiness/GCF_Readiness_News_2014_July.PDF

NDA나 접촉창구 능력개발 지원팀 구성 및 이들의 초기 전략적 프레임워크 준비 지원

조건	수원국 요청 시
내용	-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계획들(NAMAs, NAPs, NAPAs 그리고 국가 개발 전략들)의 국가별 프로그래밍 등 전략적 프레임워크 준비 지원 - 기후기금을 위한 펀딩의 기존 출처들 파악(양허성 및 비양허성재원 파악, 다양한 관련기구 및 부처들의 역할 파악) - 추가적이고 새로운 기후재원의 규모 파악
국가별 잠정예산	1명의 사무국직원(해당국에 10-15일 체류)+2명의 컨설턴트(또는 회사, 가능하다면 지역에서 구성한)와 장기 계약= 총 100,000USD

직접접근 능력배양팀 구성

조건	수원국 요청 시
내용	- 사무국은 직접접근 능력배양팀을 꾸려 잠재적인 국가의 중개자 또는 이행기구 후보들이 그들의 요청이 승인받도록 하기 위한 최소 기준 달성 도움 - 기금의 수탁기준과 그 기금의 환경 사회적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도록 함
국가별 잠정예산	1명의 사무국직원(10일 체류)+4명의 지역 컨설턴트(또는 기업)= 총 150,000USD

초기 파이프라인 지원팀을 조성

조건	수원국 요청 시
내용	- 기금을 받기 위한 우선적인 프로젝트/프로그램 제안서를 준비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국가중개자 또는 이행기구를 돕기 위한 초기 파이프라인 지원팀을 조성
국가별 잠정예산	1명의 사무국직원(10일 체류)+4명의 장기 계약 지역 컨설턴트(또는 기업)= 총 150,000USD

GCF의 능력배양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이 능력배양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수요나 비용은 나라마다 격차가 클 수가 있는 바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재원을 유연하게 할당할 필요가 있다. GCF 능력배양사업은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이하 “LDCs”), 군소도서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이하 “SIDS”), 아프리카 국가 등의 급박한 요구를 우선 반영하기로 그 원칙을 정하고 있다(GCF, 2013d). 기금의 능력배양사업 및 사전준비 지원은 GCF 원칙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GCF 운영지침은 기금의 대표적인 지원수단(financial instrument)으로서 무상지원(grant)과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시하고, 이밖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단 또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능력배양사업과 사전준비 지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상지원의 형태로 지원될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표는 향후 녹색기후기금 사무소가 제시한 향후 능력강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능력배양 지원에 대한 할당은 수원국의 요청이나 이사회의 기간별 가이드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 즉, 이사회는 그 할당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정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초기에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역적 균형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향후 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초기 결과물로 이어질 요청들, 둘째,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과 자원에 의해 기금의 능력배양 자원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청들, 셋째 특히 취약한 국가들로부터의 요청과 특수한 상황에 놓인 다른 국가들에 대한 우선고려가 그것이다.

이사회는 초기 3천만USD의 능력배양 기금을 아래와 같은 비율로 할당할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3 GCF 능력배양기금 할당비율

기금할당비율	내용
25%(US\$7.5백만)	위의 네 가지 카테고리(<표 12> 참조)에 대한 능력배양 지원 요청을 검토하기 위한 초기 조사단 파견
25%(US\$7.5백만)	초기 조사를 통해 역량강화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3 카테고리 우선순위 활동(국가지정기구 또는 국가접촉창구의 설립, 전략적인 프레임워크 지원, 중개자 또는 이행기구의 선정 도움)을 위한 기금
50%(US\$15백만)	프로그램의 초기 파이프라인 또는 프로젝트 제안 개발을 위해 제안별로 백오십만 USD의 초기자본을 제공

4.3. 적응기금(AF)의 능력배양사업

적응기금(AF)은 2014년 5월 1일 앞으로 2년간 기후재원을 위한 능력강화 프로그램(Fund's Readiness Programme for Climate Finance)을 시작할 것을 공표하였다. AF의 기후재원을 위한 능력강화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역 조직이 기후재원을 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한 그들이 변하는 환경조건에서 적응하고 탄성력을 갖게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둔 적응기금의 2년간의 이니셔티브이다(AF, 2014c). 적응기금 능력배양사업의 핵심활동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적응기금 능력배양사업 핵심활동

활동	내용
워크숍 개최	기후재원 승인과정, 프로젝트 디자인,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 기후재원 사이클 내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초대, 워크숍 개최
남-남(South-South) 무상원조 프로그램	기승인된 NIE가 NIE 승인을 받고자하는 국가를 돕는 프로그램
온라인 협력 및 지식공유	각 주체들과의 지식 교류 및 교환을 통한 지식공유

AF (2014c)

특히 AF는 또한 기후재원 승인과정에서의 남남협력을 위한 새로운 무상원조 프로그램(South-South collaboration in accreditation readiness)을 시작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 활동은 NIE 승인을 받고자하는 개도국(South)에 NIE 승인을 받은 개도국(South) 간의 협력 활동을 의미하며, (i) 잠재력 있는 NIE 후보군 발굴, (ii) NIE 후보들의 승인절차 지원과정 지원, (iii) 지원 절차 동안 지지와 조언 제공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도국간의 도움은 국가역량과 지속가능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은 AF 및 다른 재원출처에 접근하여 펀드를 받고자하는 개도국과 이미 NIE 승인을 받은 개도국과의 협력증진을 통해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펀드 접근의 기회를 좀 더 가능하고자 하게 하는 것이 취지이다.

개도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NIE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i) NIE 승인을 받았어야 하며, (ii) 적응기금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의 수행경험이 있어 적응기금 수탁기준을 효과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iii) 다른 NIE 승인을 희망하는 기관들에 대한 홍보, 참여 혹은 지원계획에 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남-남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위한 무상원조 요청은 현재 적응기금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5개의 NIE만이 이 가능하며¹⁴⁾, 신청국가당 최대 5만USD의 무상지원이 가능하다¹⁵⁾. 기금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AF, 2014b).

- NIE 후보자가 승인 지원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국내 기술 지원. 이는 기승인된 NIE 스태프들이 후보국으로 가서 그 곳에 머물며 지원하는 것을 포함
- 한 나라 안에서 NIE 후보를 선정하는 것을 지원. 이는 이해당사자들을 조정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관련된 국가접촉창구들에게 조언을 통해 최종 NIE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
- 여러 국가로부터 온 NIE 후보 지원자들의 준비를 돕기 위한 “지역” 회담/워크숍 지원

아래 표는 97만 USD의 예산으로 진행될 AF 능력배양사업의 1단계 전체 개요이다(1단계를 2년에 걸쳐 진행). AF의 능력배양사업은 크게 3가지의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 기금의 수탁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지역 기구들의 역량 제고, 둘째, 승인된 국가/지역 기관의 적응 프로젝트/프로그램 내 위험평가 역량 제고, 셋째, 강화된 지식, 지식 공유, 적응 재원에 접근하는 기술, 지식 교환 플랫폼과 상품들에 관한 더 많은 관객들을 향한 계속되는 지원이 그것이다. 아래의 표는 각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14) ① Centre de Suivi Ecologique (CSE, Senegal), ② Planning Institute of Jamaica (PIOJ, Jamaica), ③ Agencia Nacional de Investigacion e Innovacion (ANII, Uruguay), ④ Unidad para el Cambio Rural (UCAR, Argentina) and ⑤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Rwanda (MINIRENA, Rwanda)

15) 신청은 2014년 8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한다. <https://adaptation-fund.org/node/3938>

표 15 적응기금의 능력배양사업 1단계 전체 개요

성과/결과 (Outcome)	1) 기금의 수탁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지역 기구들의 역량 제고
생산물/산출물 (Output)	- 보다 효과적인 NIE/RIE 지원 제고 - 현재 국가/지역 기관들에 대한 승인 지원을 제공하는 다자기구나 양자기구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 - NIE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South-South 간 증대된 협력
활동(Activity)	- 현재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NIE 지원자들에 대한 지역별 워크숍 수행 - 트레이닝/가이드 자료 준비, RIEs/NIEs가 승인을 받도록 지원하는 컨설턴트들, 양자기구들, MIEs를 위한 2,3개의 트레이닝 세션 기획 - South-South 협력 파일럿 프로그램: 기승인 된 NIEs 중 선택하여 grant 주고 워크숍을 개발/진행하거나 1:1 동료 지원 제공
지표 (Indicator/ Target)	- 결과지표: NIE 지원자 중 승인받은 수/최소 8 - 산출물 지표: 기존의 NIEs에 대한 지원의 결과로 승인받은 지원자의 수/최소 2
성과/결과 (Outcome)	2) 승인된 국가/지역 기관의 적응 프로젝트/프로그램 내 위험평가 역량 제고
생산물/산출물 (Output)	- NIEs/RIEs가 이사회에 수준 높은 적응 프로젝트/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출 - 승인된 NIEs나 RIEs는 프로젝트/프로그램 내 환경적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평가
활동(Activity)	- 모든 승인된 NIEs/RIEs를 위해 환경적 사회적 위험평가 트레이닝을 포함한 AF 입문 세미나를 기획 - 기금의 환경/사회 정책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승인된 기관들의 하부집단들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
지표 (Indicator/ Target)	- 결과지표: 이사회가 허가한 NIEs/ RIEs의 프로젝트/프로그램 제안서 수/최소 8 - 산출물 지표: NIEs/RIEs가 이사회에 제출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제안서 중 우수한 것의 수/최소 10 - 산출물 지표: 기금의 환경/사회적 정책기준을 따를 수 있는 NIEs/RIEs의 퍼센트

성과/결과 (Outcome)	3) 강화된 지식, 지식공유, 적응 재원에 접근하는 기술, 지식 교환 플랫폼 확립을 위한 지원
생산물/산출물 (Output)	- AF Readiness 지식 교환은 NIEs와 RIEs가 AF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 도구들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주된 원천임 - 디지털 지원과 미디어 보도를 통해 AF 직접접근 방식에 대한 인식 증대
활동(Activity)	- AF Readiness 지식 교환을 촉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 모든 관련된 문서들, (프로젝트와 승인 과정에 대한)케이스 스터디 진행, 멀티미디어; 전문가와 함께 하는 웹세미나; 동료간 멘토링 네트워크(적응 기금지원과 프로젝트 사이클의 특정 단계를 겪은 사람들과 조언/통찰, 기술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또는 지식을 나누길 원하는 사람들) - 일반적인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지원: 전통적인 미디어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계속되는 지원, 기금의 직접접근과 역량개발과 관련된 미디어의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
지표 (Indicator/ Target)	- 결과 지표: 기금의 자원에 접근하고 승인받는 과정에 대한 강화된 이해(워크샵/트레이닝 등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 산출물 지표: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플랫폼 방문자 수 - 산출물 지표: AF와 직접접근방식에 대한 미디어의 언급 횟수/최소 10

AF (2014). 저자재구성

4.4. 독일 Climate Finance Readiness Program¹⁶⁾

독일 정부는 GCF의 목적달성과 이를 위한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5천만 유로를 제공하기로 공약하였는데 경제개발협력국(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rmany, 이하 “BMZ”)은 독일국제협력단(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이하 “GIZ”)나 KfW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이하 “KfW”)에 재원을 위탁하여 양자협력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위임하였다. 또한 공약금액의 일부는 다자경로를 통해(가령, 세계은행) 집행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독일환경부(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이하 “BMUB”)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세계자원기구(World Resources Institute, 이하 “WRI”)를 통한 기후재원 능력강화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BMZ, 2013).

16) GIZ, BMZ (2013) GIZ's GCF Readiness Programme

<http://www.giz.de/expertise/downloads/giz2013-en-climate-finance-gcfit.pdf> 내용을 요약 발췌하였음

이 중 GIZ와 KfW 개발은행이 담당하는 양자협력 방식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GIZ는 GIZ's GCF Readiness Programme(GCFi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GCF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접접근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개도국 능력배양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GIZ의 활동은 과거 20여 개의 개도국의 기후재원 접근, 개도국의 기후재원 관련 전문성 구축,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과 일관적 국가 프레임워크 구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이 GIZ's Ready for Climate Finance 접근법의 내용이다¹⁷⁾.

표 16 GIZ's Ready for Climate Finance의 접근법

접근분야	세부내용
1) 기후 재원 능력배양의 설계	- 재원의 출처를 포함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능력배양 분석 -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한 조정 및 합의 도출 - 예산 수립 시 기후분야 포함 - 사례: 남부 아프리카, 카메룬의 “기후 기금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연구
2) 국내 기관들의 역량강화, 직접접근 지원	- 국내 기후 기금 기관/신탁기금 강화 - 이행기관에 적합한 기관의 식별 지원 - 행정적/기술적 능력 배양 - 사례: “필리핀인을 위한 생존기금,” “아마존 펀드,”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신탁기금” 지원
3)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용지출 장려	- 재정 흐름의 투명성 개선 - 국가예산 집행능력 증진 - 내/외부의 조절 메커니즘 강화 -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설립 및 그 실행을 위한 지원 제공 - 사례: 기후변화 유닛(Climate Change Unit)의 지원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 방글라데시의 현 상황 평가
4) 정보 및 지식 축적	- 기후 재원에 대한 교육,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촉진 -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 및 요약 발표 준비 - 사례: 서아프리카의 스태프들과 파트너들을 위한 “기후 재원에 대한 소개” 교육
5) 민간영역과의 연결	- 민간영역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 지원 -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과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후 프로젝트 개발 - 지역 내 투자 잠재가능성 파악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사례: 아시아의 공공/민간 기후재원 강화

Fisher A. (2013). 저자재구성

17) Fisher A. (2013)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GCFit의 경우 개도국이 국제기후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고객우선의, 장기적 역량강화와 기술지원의 패키지를 제공한다. GCFit의 활동은 크게 i) 국가 기후재원관련 기관 지원, ii) 국가별 기후전략 및 정책 지원, iii) 지식과 경험의 공유 등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17> 참조).

표 17 GCFit의 세부내용

구분	내용
국가 기후재원관련 기관 지원	필요한 관련 업무 수행 및 GCF 직접접근 방식 승인을 위한 지원, 국가기후재원조정기관들의 업무 지원
국가별 기후전략 및 정책 지원	기후재원의 근간이 되는 기후전략 및 정책 지원 (예: 국가적응계획, 저탄소개발전략 등)
지식과 경험의 공유	남남(South-South) 교류증진, 모범사례의 공유

KfW의 활동은 직접접근 및 국제접근을 위한 개발은행 역량개발과 국가 GCF 투자 계획 및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등의 개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 개발은행 및 금융중재기관이 GCF 이행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KfW는 이들이 GCF의 직접접근을 위해 승인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인데 특히 수탁기준,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역량을 지원한다. 후자의 경우 국가투자 계획을 통한 사업의 파이프라인 구축을 돕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파이프라인 단계 작업 투자방해요인분석 투자제안 평가를 위한 기술, 재정, 경제자문 및 유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한다¹⁸⁾.

아래의 표는 지금까지 설명된 독일의 여러 가지 능력배양사업의 주요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18) Württenberger L., (2013)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표 18 독일의 기후재원을 위한 능력배양사업

능력배양사업	사업내용
제도적 지원	- 개발은행을 포함한 지역 내 혹은 국가별 기후재원 기구가 직접적 접근승인을 받도록 지원하거나, NDA 지정 및 국가접촉창구 추진을 지원 - 국가조정 기능이나 다수의 이해당사자간 조정기능, 그리고 수탁기준 및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도록 자문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
전략적 · 개념적 자문 제공	- NAPs, NAMAs 등 국가별 기후변화 전략과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저탄소 개발 계획 구축 및 정책패키지 제공을 통해 기후재원 결정에 기반을 제공 - 이러한 정책패키지는 국가전략과 부분전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이를 개발전략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함
국가 GCF 투자 계획 및 관련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	- 핵심 분야에 국가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GCF를 통한 연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 구축 - 투자 제안서 평가 및 우선순위 책정에 대한 기술적 · 재정적 · 경제적 자문 등의 활동을 포함 - 유망한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 지원
국제단위의 경험공유	- 국가단위 및 국제단위의 워크숍, 남남협력, 지식정보 관리와 경험평가 등을 통해 기후재원 능력배양에 대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모색

UNDP(2012)

이밖에 UNEP, UNDP, WRI 및 기타 다자개발기구가 추진하는 다자협력방식의 지원은 GCF에 중점을 두고, 수원국의 국제 기후재원의 활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능력 배양사업이다. 특히 이 다자협력방식은 GCF 사무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상기 언급된 기관 및 각국의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원을 요청하는 개도국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KOICA가 주도하는 기후재원 능력배양 사업

앞서 3장을 통하여 GCF가 제시하는 수탁기준과, AF의 수탁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4장을 통하여 GCF, AF 그리고 GIZ의 능력배양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이 두 장에서 설명한 기후재원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충족시켜야 할 수탁기준과 이를 위해 선행된 능력배양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향후 KOICA가 능력배양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장에서는 이들의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KOICA가 주도하는 기후재원 능력배양프로그램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개도국은 자국의 감축과 적응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공유하는데 있어서 능력부족으로 인한 한계와 동시에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 및 효과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경험한다. 따라서 능력배양사업은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의 역량발전을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제기후금융에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경 ODA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개도국이 기후재원에 접근할수록 돕는 능력배양사업으로 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ODA 사업으로 Readiness 프로그램은 GCF 펀딩 준비기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는 GCF 사무국이 주된 기능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 그 시간적 차이를 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ODA 사업으로 Readiness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능력배양사업수요에 비해 부족한 GCF의 능력배양사업 예산의 부족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KOICA가 현재 많은 양자원조기간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능력배양사업을 실시할 경우 GCF 및 기후재원에 있어서 주요 국제적인 플랫폼이 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독일의 GCFit와 같이 우리나라 환경 ODA 사업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브랜드를 개발, 이를 시행한다면 이 역시 KOICA 환경 ODA의 브랜드화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원조기간인 KOICA는 시대적 흐름과 필요에 맞추어 독일의 GCFit와 같이 우리나라 사업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5.1. KOICA의 기후재원 능력배양 사업구상(안)

아래 <표 19>는 능력배양에 필요한 중요 요소와 그 요소에 맞는 단위별 수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는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 국가에서의 능력배양은 국가능력, 기관 그리고 개인/기술 수준까지 각 수준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기후재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된다. ODA 사업으로서 능력배양사업은 우선은 이 중에 국가능력수준, 정책 수준(필요에 따라 기관수준)까지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능력배양사업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수원국 스스로가 그 나라의 기관과 개인/기술 수준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능력배양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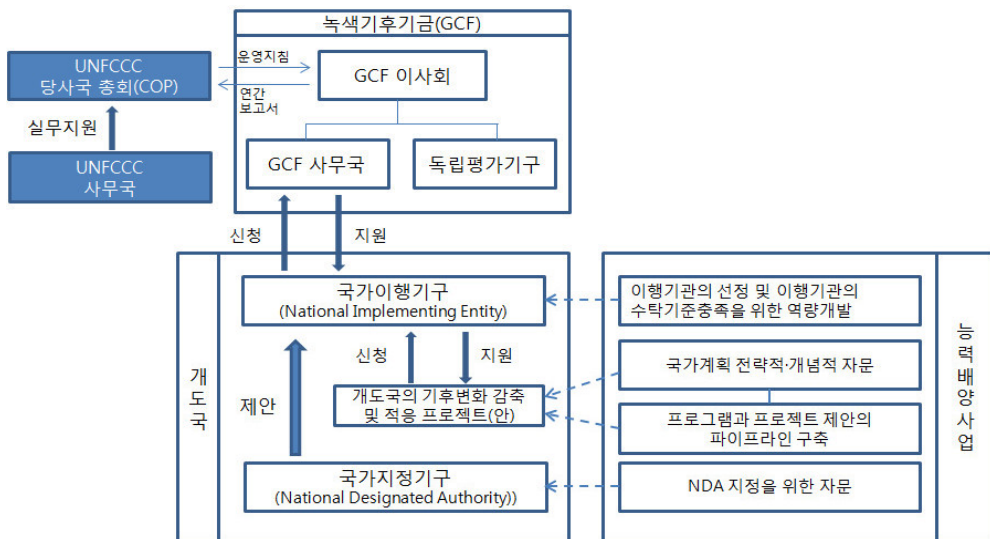
표 19 기후재원 능력배양사업 관련 필수 역량요소

	재정설계	재원 접근	기금 전달	모니터링 및 보고와 확인
국가 능력 수준	-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평가 - 조달 가능한 자금처를 확인	- 재원 프로그래밍 - 재원에 직접접근 - 재원을 혼합/결합 - 민간재원을 촉진	- 프로젝트, 프로그램, 섹터 광범위한 실행과 집행 - 지역별 전문지식과 기술 공급 - 조정 시스템	- 모니터링, 보고, 확인 - 성취에 기반을 둔 지급
정책 수준	녹색, 저탄소, 기후변화에 기후복원력을 갖춘 개발전략 및 실행 계획(비용 포함) 수립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섹터별 인센티브와 규제 정책		
기관 수준	국가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효과적인 조정 메커니즘	세이프가드와 수탁기준을 갖춘 이행기구; 국가 은행 기관들	세이프가드와 수탁기준을 갖춘 이행 및 집행기구 ; 다양한 이해당사자 메커니즘; 기후변화 인식이 있는 관련된 공공 재무 관리 체계	품질관리 보고체계 확립위한 중앙 집중화 된 장치; 의사소통 장치
개인 / 기술 수준	베이스라인 평가; 투자 및 재무흐름평가 평가; 지출 내역 검토; 비용-편익 분석	재무관리 기술(결합/혼합); 프로젝트/프로그램 공식화기술; 민간부분 가격보조금 분야 전문지식	테크놀로지 전문가(예: 동력에너지 기술 설치); 프로젝트 관리기술	비용 검토 방법; 온실가스 인벤토리; 독립적인 인준 기술

UNDP (2012)

4.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4개의 개도국 국가가 i) 효율적인 NDA 조직의 설립, ii) GCF 관련된 전략적인 우선순위 개발, iii) 기금의 투자 기준에 맞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개발, iv) 국내 기관들이 승인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의 내용으로 GCF의 사무국에 능력배양사업 지원요청을 해 온 상태이다. 이는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대한 그들의 수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이 수요를 근거로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9 녹색기후기금 직접접근을 위한 능력배양사업 제시(안)



상기 그림은 녹색기후기금의 구조와 함께 그 구조 속에서 가능한 능력배양사업의 예시를 도식화한 것이다. KOICA가 개도국에 능력배양사업으로 지원가능한 분야로 크게 i) NDA 지정을 위한 자문, ii) 개도국 국가계획 작성에 있어 전략적·개념적 자문, iii)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제안의 파이프라인 구축, iv) 개도국 국가기관이 NIE로 승인되기 위한 역량개발 등이 있을 수 있다.

1) NDA 지정을 위한 자문

2014년 4월, GCF 사무총장인 Hela Cheihrouhou은 개도국의 재정부장관과 UNFCCC

의 접촉 창구(focal points)들에게 GCF의 능력배양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NDA 혹은 국가접촉창구를 지정해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여러 국가들이 과도기적인 수단으로, NDA가 동의를 얻는 동안 사무국과 최소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국가접촉창구(focal points)를 지정했다. 적합한 NDA를 지정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국가접촉창구를 과도기적인 수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사무국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2014년 8월 28일 현재, 55개의 개도국은 그들의 NDA 혹은 국가접촉창구를 지정하여 GCF 사무국에 통보¹⁹⁾한 상태이다.

이 통보한 55개의 개도국 수는 기후변화 지원이 필요한 많은 개도국수를 고려해 볼 때 절대적으로 적은 수라고 보여진다. 이는 아직 많은 개도국이 GCF 직접접근방식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지하더라도 국가적으로 NDA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들 국가에게 직접접근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하고 NDA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관을 NDA로 지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능력배양사업 활동이라 하겠다. NDA 지정을 위한 자문이 GCF 사무국 최우선 활동 중 하나인 것도(〈표 11〉 참조) 이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사무국에 통보한 55개국의 나라 중 카메룬, 콩고,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몽골, 르완다, 솔로몬군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오직 9개 우리나라 중 점협력국(26개국 중)만이 NDA 혹은 국가 접촉창구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즉 나머지 17개의 국가에 대해서 NDA 지정을 위한 자문활동이 요구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원국은 각국의 NDA를 지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NDA는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방식을 실행할 NIE를 제안하거나, 국가 기후전략 및 계획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GCF의 지원 대상으로서 이사회에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GCF 초기의 준비 및 대비 활동범주에 NDA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 GCF의 예산과 인력으로 능력배양사업지원을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ODA 활동으로 그 부족분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19) http://www.gcfund.org/fileadmin/00_customer/documents/Readiness/2014-8-28_Website_NDA_designation_list.pdf

2) 개도국 국가계획 작성에 있어 전략적·개념적 자문

이 활동 역시 GCF 능력배양사업의 최우선 활동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독일의 능력배양사업의 핵심활동 중 하나이자 동시에 우선적으로 개도국에 지원되어야 가장 기초적인 요소임을 설명한다. 이는 수원국의 기존 지배출개발전략 및 계획, NAMAs, NAPs, NAPAs 등의 계획 지원 및 내용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들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지원 및 개념 자문은 개도국이 기후재원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3)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제안의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제안의 파이프라인 구축은 GCF 능력배양사업의 최우선 활동 중 하나이며 동시에 독일의 능력개발사업의 주된 활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는 핵심분야에 국가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GCF를 통한 연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투자 제안서 준비 및 평가, 프로젝트 우선순위 책정에 대한 자문활동, 유망한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UNDP, 2012). 특히 이 활동은 3천만 USD의 GCF의 능력배양사업 초기 예산 중 가장 큰 비율로 할당된(50%, 1천5백만, <표 13> 참조) 활동으로 이를 통해 제안된 능력배양 사업들 사이에서의 중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4) 이행기관의 선정지원 및 이들을 위한(승인기준 충족) 역량개발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KOICA가 개도국에 능력배양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분야는 이행기관의 선정지원 및 이들을 위한(수탁기준 충족) 역량개발이다. 기관의 성격 파악 및 이 선택기관의 수탁기준 충족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개도국 NDA가 적절한 수준의 이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관 선정 후 이들이 수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역량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행기관의 선정 지원 역시 GCF 사무국이 제시하는 최우선 활동에 포함되어 있으나 ‘개도국 국가기관이 NIE로 승인되기 위한 역량개발’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능력배양사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나 아직 GCF

사무국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KOICA가 개발하여 KOICA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KOICA의 능력배양사업의 집중과 개발이 요구된다.

3장(이행기관의 승인기준)에서 본 연구는 GCF가 제시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와 수탁 기준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행기관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분야의 확인과정을 통해 승인되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현재 이 기준들은 임시기준이나 최종기준안은 이 임시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근거로 개도국 기관이 NIE로 승인되기 위한 역량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3.3.에서 살펴본 AF의 수탁 기준 역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직접접근의 선행기관인 AF의 경험은 GCF의 활동가이드라인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2. 향후 수원국 선정기준

본 장에서는 향후 KOICA가 능력배양사업을 수행할 때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나라에 대한 선정기준과 각 나라 상황에 적합한 능력배양사업의 예시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6개의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²⁰⁾.

GCF 능력배양사업은 모든 개도국을 준비 지원의 대상으로 하지만,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최빈국(LDCs), 군소도서국가(SIDS), 아프리카 국가 등의 급박한 요구를 우선 반영하기로 그 원칙을 정하고 있다(GCF, 2013d). 이러한 GCF의 자원배분에 대한 대전제는 KOICA의 능력배양사업 수원국 선정기준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대전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을 조건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3가지 기준으로 26개 중점협력국을 나누었는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각국의 기후변화 취약정도이다. German Watch는 2006년부터 매년마다²¹⁾ 기후변화로 인한 총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피해 금액과 GDP 대비 피해 금액의 비중, 이 네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20) 우리 정부는 2010년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 26개국을 선정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해 전체 ODA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였다.

<https://oda.koica.go.kr/intro/Odalntroduce5.do>

21) 2007년에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각 국가별 기후위기지표(Climate Risk Index: CRI)를 고안하여 발표하고 있고 있는데 아래의 <표 20>는 2014년 기준의 결과로 1993년-2012년 사이 기후변화 위기에 크게 노출된 10대 국가들을 보여준다. 이 기후위기 지수는 각 나라의 기후위기의 정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1993년-2012년 사이 기후변화 위기에 크게 노출된 10대 국가들은 모두 개도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무엇보다 먼저 개도국의 기후 취약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우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근거를 부여한다.

표 20 기후위기지수 (Climate Risk Index: CRI)(1993년-2012년)

순위	국가	CRI점수	연평균 사망자 수	연평균 10만명 당 사망자 수	총 피해액 (백만달러)	GDP 대비 피해 규모(%)	재해 발생수 (1993- 2012)
1	혼두라스	10.17	329.80	4.86	667.26	2.62	65
2	미얀마	11.83	7135.90	13.51	617.79	1.20	38
3	아이티	16.83	307.50	3.45	212.01	1.73	60
4	니카라과	17.17	160.45	2.81	224.61	1.74	44
5	방글라데시	19.67	816.35	0.56	1832.70	1.16	242
6	베트남	24.00	419.70	0.52	1637.50	0.91	213
7	필리핀	31.17	643.35	0.79	736.31	0.29	311
8	도미니칸 공화국	31.33	212.00	2.43	182.01	0.32	54
8	몽골	31.33	12.85	0.52	327.38	3.68	25
10	타이	31.50	160.35	0.26	5410.06	1.29	193
10	과테말라	31.50	82.35	0.69	312.23	0.58	72

German Watch (2014)

따라서 능력배양사업의 수원국 우선순위선정 역시 개도국의 기후 취약성, 특히 이 중에서 자연/지역적인 기후노출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능력배양사업의 수원국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취약성이 점수가 높은(즉, 기후변화에 있어 더 취약한)

순서로 정렬하였다. 기후취약성을 고려하기위해 참조한 데이터는 University of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dex(이하 “ND-GAIN”)이며 이 중 ND-GAIN Index score를 구성하고 있는 취약성점수(Vulnerability Score)를 사용하였다(ND-GAIN Index, 2012)²²⁾.

두 번째 선정기준으로 개도국의 소득수준이다. 이는 국가의 경제력은 기후변화의 적응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 나라의 빈곤수준은 기후변화의 피해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는 3년마다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수원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따라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2010년 GNI < \$905 및 UN 지정 인적자원지수, 경제적 취약성 지수 고려), 기타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 2010년 GNI < \$1,005) 저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2010년 GNI \$1,006–\$3,975), 고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2010년 GNI \$3,976–\$12,275)의 4단계로 분류된다²³⁾. 한국의 26 개 중점협력국을 OECD 수원국 소득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소득유형별 구분으로 볼 때 우리나라 26개국 중점협력국은 최빈국이 12개국, 저중소득국이 11개국, 고소득국은 3개국으로 나누어진다.

22) German Watch의 CRI 지수의 경우 상기 설명한 4개의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 지수는 개도국의 지역/자연적인 기후노출 상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자연/지역적인 기후취약성을 대표하기 위하여 ND-GAIN Index를 사용하였다. ND-GAIN Index는 University of Notre Dame이 고안한 기후변화 취약성 인덱스로 이는 취약성 점수(Vulnerability score)와 역량점수(Readiness score)를 합산하여 점수이다. 이중 취약성점수는 국가의 기후노출, 민감도, 기후관련 위해사항에 대한 대응능력 및 식량, 식수, 보건, 인프라의 전반적인 상태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D-GAIN Index 중에서 기후노출만 고려하였다.

23) 이는 2011–2013년 기준 수원국 기준임.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2_S03.jsp

<http://www.oecd.org/dac/stats/DAC%20List%20used%20for%202012%20and%202013%20flows.pdf>

표 21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 소득유형별 분류

지역	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GNI < \$905)	저중소득국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LMIC (GNI \$1,006-\$3,975)	고소득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UMIC (GNI \$3,976-\$12,275)
아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아프리카	콩고,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우간다	카메룬, 가나	
중동, CIS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		볼리비아, 파라과이	콜롬비아, 페루
오세아니아	솔로몬군도		

주: *GNI (Gross National Income)

세 번째 선정기준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이하 “NAMA”)의 존재 유무이다. NAMA는 개도국이 기술, 재정, 능력 배양을 지원받아 자발적으로 국가별 수준 및 역량에 부합하게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연비 효율성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등 각종 정책 및 자발적 감축행동을 등록(Registry)한 후 국제기구에 의해 MRV 검증²⁴⁾을 받게 된다. NAMA 등록부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신흥국들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선진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²⁵⁾. 이처럼 개도국의 NAMA 작성 및 참여는 개도국의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함께 환경정책 인프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개도국의 NAMA 전략의 여부는 각 국가의 환경/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의지이자 기반 요소로 볼

24) MRV란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의 줄임말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행동이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5) NAMA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유형이 있는데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은 아래 3개 중 Internationally-Supported NAMA를 의미한다.

유형	내용
Domestically-supported NAMA	국제적 지원 없이 개도국이 스스로의 자원과 능력으로 이행
Internationally-supported NAMA	재원, 기술이전, 능력형성 등 국제적 지원을 통하여 이행
Credited NAMA	NAMA 이행 결과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일부를 크레딧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

이호무 (2011)

수 있다²⁶⁾.

아래 표는 상기 제시된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 분류한 중점협력국 분류이다²⁷⁾.

표 22 능력배양사업 중점협력국 분류

그룹	취약성	소득 수준	NAMA 여부	국가
A	아주 높음	LDC	없음	콩고*, 동티모르,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B	아주 높음	LDC	있음	에티오피아*, 솔로몬군도*, 우간다, 르완다*, 라오스
C	다소 높음	LMIC	없음	카메룬*, 가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D	다소 높음	LMIC	있음	파키스탄, 몽골*,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E	높음-보통	UMIC	있음	페루,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
NDA나 국가접촉창구를 지정하지 않은 국가				동티모르, 우간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네팔, 가나, 파키스탄, 필리핀,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스리랑카,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

※*는 NDA나 국가접촉창구를 지정한 국가를 표시함

※그룹 내 국가의 배열 순서는 기후취약성지수의 내림차순임

5.3. 능력배양사업 실시 가이드라인

기후재원을 위한 능력배양사업은 기후재원의 필요성 논의와 함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다. 따라서 능력배양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성이 없다면 기후 변화 감축과 적응의 더 큰 규모의 투자 실효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본 장에서는 향후 KOICA의 능력배양사업에 있어 디자인 및 이행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NIE 승인을 위한 능력배양사업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앞서 GCF와 같은 직접접근 기금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적응기금의 경우 16개의 NIE를 승인한 상태이다. NIE가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탁기준을 충족하여

26) http://www.nama-database.org/index.php/Main_Page

27) <표 22>는 26개 중점협력국 중에 고중소득국이 제외되었으며 ND-GAIN의 Vulnerability Score 1000이하의 국가 역시 제외되었다.

야 하는데 수탁기준이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자산을 관리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이나 사업수행기관이 준수해야하는 기준을 의미한다(정지원 외 2011). AF의 경우 많은 국가기관들이 수탁기준에 미달하여 승인 실패율이 높았다. 이렇게 NIE 승인에 실패하게 되면 그만큼 직접접근을 통한 기금의 혜택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 NIE 선별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만들고 또한 개도국의 NIE 지원절차 도움으로써 극복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수원국 국가기관이 NIE로 승인받기 위한 역량개발이 능력배양사업에서 가장 먼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CF가 제시한 능력배양사업의 최우선 활동에는 이 부분이 배제되어있는 바(〈표 11〉 참조), GCF 사무국이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앞으로 공여국들이 ODA활동으로 메꾸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능력배양사업 활동은 수원국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8〉에서 보이는 능력배양사업 도출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개도국의 수요와 필요는 능력배양사업의 가장 기초가 된다.

셋째, 능력배양사업 지원은 유연해야 한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많은 개도국은 각각의 처한 경제적·제도적 환경이 다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그 지역에 맞는 특정한 해결책을 찾도록 다양한 욕구에 맞춤 형식이어야 하고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서로 다른 수준의 능력배양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능력배양사업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정책 결정과 연관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금에 접근하는 것만 관련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해당 국가의 개발목표의 연장선상에서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선정과 함께 중요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5.4. 능력배양사업 제시

본 장에서는 5.2.에서 도출한 각각의 그룹에 대해 이들에게 적합한 능력배양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표 22〉에서 제시한 5개의 그룹은 능력배양사업 중 어느 그룹이 먼저 지원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각 그룹 별로 우선 지원되어야 하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성격이 다름을 설명한다. 아래 〈표 23〉는 그룹별로 제안하는 능력배양사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23 중점협력국 분류별 우선적 능력배양사업

그룹	취약성	소득 수준	NAMA 여부	국가	우선적 능력배양사업
NDA나 국가접촉창구를 지정하지 않은 국가				동티모르, 우간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네팔, 가나, 파키스탄, 필리핀,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스리랑카,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	NDA 지정을 위한 자문
A	아주 높음	LDC	없음	동티모르,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NDA 지정을 위한 자문(NDA 역량강화)
B	아주 높음	LDC	없음	콩고*, 에티오피아*, 솔로몬군도*, 르완다*	국가계획 전략적·개념적 자문
C	아주 높음	LDC	있음	우간다, 라오스	NDA 지정을 위한 자문
D	다소 높음	LMIC	없음	카메룬*, 가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국가계획 전략적·개념적 자문
E	다소 높음	LMIC	있음	파키스탄, 몽골*,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NIE 선정 및 NIE 후보의 능력강화 -프로그램/프로젝트 제안의 파이프라인 구축
F	높음-보통	UMIC	있음	페루,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	

*는 NDA나 국가접촉창구를 지정한 국가를 표시함

※그룹 내 국가의 배열 순서는 기후취약성지수의 내림차순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26개 중점협력국 중 카메룬,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몽골, 르완다, 솔로몬군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9개 국가가 NDA 혹은 국가 접촉창구등록을 마쳤다. 첫 번째 그룹은 본 연구가 설정한 세 가지의 그룹분류기준에 얹매이지 않은, NDA 혹은 국가 접촉창구 지정을 하지 못한 17개의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국가들이다. 상기 17개 국가에서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기후취약성, 소득수준, NAMA 여부를 떠나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능력배양사업은 바로 NDA 지정을 위한 능력배양사업이다.

다음으로 분류기준으로 나눈 그룹들을 살펴보면, 가장 기초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룹은 A그룹이다. 이 그룹의 특징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아주 높고 국가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떨어질 뿐 만 아니라 NAMA의 부재로 볼 때 국가자체

가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지가 떨어지거나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그룹이다. 이들 그룹에게는 우선적으로 국가지정기구 또는 국가접촉창구의 설립을 돕는 차원에서의 능력배양사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아울러 이 그룹은 A그룹과 C그룹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기준은 유사하나 국가의 환경/기후변화 의지가 조건적으로 다르다. 추가적으로 잠정적인 NDA에 대한 역량강화 역시 동시에 요구된다. NDA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2.2. 참조) 개도국에 NDA에 역할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개도국 NDA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B그룹의 경우, A그룹과 비교해 볼 때, 취약성이 아주 높고 국가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떨어질 뿐 만 아니라 NAMA의 부재 등 조건이 동일하나, B그룹의 세 나라는 이미 NDA나 국가접촉창구를 지정한 국가이므로 NDA 지정을 위한 능력배양사업 보다는 국가계획 전략적·개념적 자문이 필요한 국가이다.

C그룹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국가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떨어지나 국가자체가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지가 A, B그룹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NDA나 focal point를 지정하지 국가로 이 그룹의 나라에게도 NDA 지정을 위한 자문이 우선 필요하다.

D그룹의 경우, 취약성은 아주 높지는 않으나 다소 높은 편이고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저중소득국이며 NAMA는 존재하지 않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따라서 전략전략적인 프레임워크 계획 지원 및 내용강화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이 요구된다. 각각의 개도국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NAMA, NAP, NAPA 등 여러 가지의 전반에 걸친 전략적 계획을 능력배양사업을 통해 수립할 수 있다. 각국이 이러한 전략적 계획이 잘 정의되고 계획될수록 더 빠르게 기금 지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능력배양사업은 개도국의 비전, 계획,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E와 F그룹의 경우 취약성은 아주 높지는 않으나 다소 높은 편이고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저중소득국이거나 고중소득국으로 빈곤부분에서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그룹이다. 이 그룹들은 둘 다 NAMA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국가들의 환경전략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들 그룹에게 요구되는 능력배양사업은 NIE 선정 및 NIE 후보의 역량강화이다. 녹색기후기금 체제 속에서 수원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금에 대한 직접접근인 바, 가장 먼저 적당한 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다음으로 이들의 승인절차를 돕는 방법이 있다. 현시점에서 GCF가 제시하고 있는 initial(interim) 수탁기준을 바탕으로 후보 NIE 선정 및 NIE 후보의 능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진다. 또한 동시에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제안의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지원 역시 가능하다. 이는 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우선적인 프로젝트/프로그램 제안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수원국의 기관이 NIE 승인이 되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개도국이 처한 사정 반영과 함께 능력배양사업은 GCF의 준비상황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비 지원의 범위도 함께 변하게 되는데 기금의 초기에는 NDA 또는 국가 접촉 창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킨 후, 그 다음에는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GCF의 승인절차 및 수탁기준, 환경/사회 세이프가드가 확정된 이후에는 기금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배양 지원, 즉 후보 NIE가 승인되기 위한 조건충족을 위한 능력배양 지원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 제시한 3가지의 능력배양사업 활동 역시 이에 바탕을 두고 제시된 내용으로 우선 기금의 초기시기인 이때에는 무엇보다 NDA 또는 국가 접촉창구에 대한 지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중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14개국의 개도국은 GCF 사무국에 능력배양사업신청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중 우리나라 26개 중점협력국에 해당되는 나라는 오직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몽골, 르완다 이렇게 4개의 국가이며 이 4개의 국가들은 이미 GCF 사무국에 NDA 지정을 통보한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GCF 혜택에서 멀어지지 않고 개도국이 GCF 사무국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이들이 GCF 사무국의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NDA 또는 국가접촉창구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여 질 때 좀 더 개발된 능력배양사업의 효과성을 개도국에 기대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지난 2013년 12월 개소한 녹색기후기금의 성격 파악과 함께 KOICA가 GCF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자 향후 환경 ODA 사업으로 능력배양사업을 제시하였다. GCF 사무국은 독일과 우리정부의 공여로 조성된 3천만불로 GCF 능력배양사업을 실시할 것임을 공표하였으나 이 예산은 개도국의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 과잉 수요는 전 세계 환경 ODA 사업을 통해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GCF 사무국의 능력배양사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과 별도로 ODA 사업으로의 기후변화 능력배양사업만을 다루었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의 필요성 논의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녹색 ODA 개념을 수정, 보완하고 목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기후재원의 필요성과 개도국의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수요를 연계하여 고려해보면, ODA 사업으로의 기후변화 능력배양사업은 시의적절하며 향후 환경 ODA 사업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사료된다.

6.1. 요약 및 시사점

개도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으며,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취약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 개도국이 기후재원 능력배양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수원국으로 하여금 재정자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러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재정 자원들에 국제적인/다자간 재정 중개자가 아닌 국내의 중개자를 통해 직접 접근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능력배양이란 수원국들이 다가오는 세계적인 기후 재원의 재편에 있어서 완전한 참여자로 행동하기 위해 내부의 재정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UNDP, 2011). 이를 위하여 개도국의 원활한 기금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비 역량 지원이 필요한데 능력배양사업은 개도국의 기금으로의 직접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의 수탁원칙 및 기준, 환경 및 사회적 세이프가드를 충족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성격 파악과 함께 KOICA가 GCF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향후 환경 ODA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특히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GCF 사무국의 능력배양사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과 별도로 ODA 사업으로의 기후변화 능력배양 프로그램만을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GCF의 주요 원칙인 수원국 주인의식과, 주요 특징인 직접접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개도국이 기후재원에 직접접근 하기 위하여 이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승인기준(환경/사회세이프가드와 수탁기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후재원의 접근을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배양사업의 정의 및 필요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능력배양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KOICA가 주도하는 능력배양프로그램에 대한 밑그림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그림 9〉 참조).

또한 본 연구는 KOICA가 능력배양사업을 수행할 때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나라에 대한 선정기준과 각 나라 상황에 적합한 능력배양사업의 예시를 26개의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원국의 기후취약성, 개도국의 소득수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유무에 따라 26개국을 6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상황에 맞는 능력배양사업을 제시하였다(〈표 23〉 참조).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룹과 제안된 능력배양활동과 상관없이 아직 NDA나 국가접촉창구를 지정하지 않은 17개 중점협력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기후취약성, 소득수준, NAMA 여부를 떠나 가장 먼저 NDA 지정을 위한 능력배양사업이 고려되어야 한다.

능력배양사업은 개발도상국이 그 지역에 맞는 특정한 해결책을 찾도록 다양한 욕구에 맞춤 형식이어야 하고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서로 다른 수준의 능력배양사업을 제시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되어야한다. 또한 능력배양사업은 단순히 기금접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해당국가의 개발목표의 연장선상에서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에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미래 개도국의 수요에 비해 현재 많은 양자원조기간이 이 사업에 대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KOICA가 이 사업을 개발·발전시킬 경우, GCF 및 기후재원에 있어서 주요 국제적인 플랫폼이 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독일의 GCFit와 같이 우리나라 환경 ODA 사업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 브랜드를 개발, 이를 시행한다면 이 역시 KOICA 환경 ODA의 브랜드화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원조기간인 KOICA는 시대적 흐름과 필요에 맞추어 독일의 GCFit와 같이 우리나라 사업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능력배양사업 제시안 중에 ‘이행기관의 선정 지원 및 이들의 승인기준 충족을 위한 역량개발’ 활동은 능력배양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나, 아직 GCF 사무국과 독일의 능력배양사업에서도 현재 크게 다루지 않는 영역이다. 따라서 KOICA가 이 부분에 있어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능력배양사업에 있어 집중과 개발이 요구된다.

공여국으로서 향후 개도국에 능력배양사업의 도전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 문제를 국가별 계획과 영역별 정책의 주요문제로 부각시켜 그들로 하여금 기후변화문제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능력배양사업 활동은 ODA 사업으로서 능력배양사업은 우선은 이 중에 국가능력수준, 정책 수준(필요에 따라 기관수준)까지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한 국가에서의 기후재원을 위한 능력배양이란 국가능력, 기관 그리고 개인/기술 수준까지 각 수준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기후재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능력배양사업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수원국 스스로가 그 나라의 기관과 개인/기술 수준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원국을 돕는 수준으로 능력배양사업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2).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기금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 보도자료 (2012.3.13).
- 기획재정부 (2013). “녹색기후기금 유치백서.” 보도자료 (2013.2.25).
- 기획재정부 (2014). “제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 한국과 독일 주도로 GCF 능력배양 사업 개시의 기반 마련.” 보도자료 (2014.2.24).
- 서정민 외 (2010).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정석, 강희찬 (20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호무 (2011).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국내적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에너지경제연구원.
- 임소영 (2012). 『녹색기후기금(GCF)의 의의와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2012.12. 산업연구원.
- 임소영 (2014). 『녹색기후기금의 사업모델체계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산업경제 분석 2014.01. 산업연구원.
- 정지원 외 (2011).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원 외 (2013).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청와대 (2012). “인천 송도 유치 성공한 ‘녹색기후기금’ 이란?” 정책브리핑 (2012.10.20).
- 한국수출입은행 경제기획본부 (2013). 『숫자로 보는 ODA— 2013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한국수출입은행.
- Adaptation Fund(AF) (2014). Programme to Support Readiness for Direct Access to Climate Finance for National and Regional Implementing Entities, available from <https://www.adaptation-fund.org/sites/default/files/AFB%20B.23.5%20Execution%20arrangements%20of%20the%20Readiness%20Programme.pdf>.
- AF (2014b). Instructions for applying for grants to support NIE accreditation, available from <https://adaptation-fund.org/sites/default/files/>

[AF%20Readiness%20Programme-accreditation_support_grant_instructions_May2014.pdf](#).

- AF (2014c). AF Readiness Flyer 2014, available from <https://adaptation-fund.org/sites/default/files/AF-ReadinessFlyer2014-final.pdf>.
- Climate & Development Knowledge Network(CDKN) (2013). Enhancing direct access to the Green Climate Fund, June 2013.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 (2013). Climate Finance Readiness Programme: Early action for ambitious goals.
- Fisher Alexander (2013). Preparing the Eco-system for Climate Finance in Partner Countries, Seminar on Innovative Climate Financing Mechanisms, available from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38214299>.
- Frankfurt School–UNEP Collaborating Centre for Climate& Sustainable Energy Finance(FS–UNEP Collaborating Centre) (2014). National Climate Finance Institutions Support Programme–Direct Access to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and Associated Fiduciary Standards, April 2014.
- GCF (2011). Governing Instrument for the Green Climate Fund, available from http://gcfund.net/fileadmin/00_customer/documents/pdf/GCF-governing_instrument-120521-block-LY.pdf.
- GCF (2013). Business Model Framework: Access Modality, available from http://www.gcfund.net/fileadmin/00_customer/documents/pdf/B-04_05_BMF_Access_Modalities_11Jun13.pdf.
- GCF (2013b). Business Model Framework: Access Modalities–Accreditation, available from http://gcfund.net/fileadmin/00_customer/documents/pdf/GCF_B05_08_BMF_Accreditation_fin_20130924.pdf.
- GCF (2013c). Business Model Framework: Country Ownership, available from http://www.gcfund.net/fileadmin/00_customer/documents/pdf/B-04_04_BMF_Country_Ownership_13Jun13.pdf.
- GCF (2013d). Modalities for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available from

- http://gcfund.net/fileadmin/00_customer/documents/pdf/GCF_B05_14_Readiness_fin_20130920.pdf.
- GCF (2014). Detailed Programme of Work on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available from http://gcfund.net/fileadmin/00_customer/documents/pdf/Detailed_Programme_of_Work_on_Readiness_and_P_reparatory_Support_fin_2014,...pdf.
- GCF (2014b). Green Climate Fund Readiness: May 2014 Newsletter, available from http://www.gcfund.org/fileadmin/00_customer/documents/Readiness/2014-5-15_Readiness_Newsletter_May_2014_lv.pdf.
- GCF (2014c). Guiding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Accrediting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Implementing Entities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the Fund's Fiduciary Principles and Standards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available from http://gcfund.net/fileadmin/00_customer/documents/MOB201406-7th/GCF_B07_02_Guiding_Framework_for_Accreditati_on_fin_20140512_16.30_hrs.pdf.
- GCF (2014d). Progress Update and the Readiness Program, available from http://www.gcfund.org/fileadmin/00_customer/documents/Readiness/2014-6-23_GCF_Readiness_Bonn_2014_circulation.pdf.
- GCF (2014e). Update on the GCF's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me, available from http://www.gcfund.org/fileadmin/00_customer/documents/Readiness/GCF_Readiness_Presentation_18_July_2014.pdf.
- GIZ, BMZ (2013). GIZ's GCF Readiness Programme, available from <http://www.giz.de/expertise/downloads/giz2013-en-climate-finance-gcfit.pdf>.
- GIZ (2013). Ready for Climate Finance: GIZ's Approach to Making Climate Finance Work: Building on climate expertise and good financial governance.
- Liane Schalatek, Smita Nakhooda (2013), The Green Climate Fund, Climate Finance Fundamentals 13,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 Neil Bird, Simon Billett, Cristina Colon (2011). Direct Access to Climate

Finance: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and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The Nature Conservancy (2012). Climate Finance Readiness Lessons Learned in developing Countries, available from

<http://change.nature.org/wp-content/uploads/TNC-Climate-Finance-Readiness.pdf>.

NO-GAIN Index (2012). Country Rankings-Vulnerability, available from <http://index.gain.org/ranking/vulnerability>.

UNDP (2011). Direct Access to Climate Finance: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Discussion Paper.

UNDP (2012). Readiness for Climate Finan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what it means to be ready to use climate finance, available from http://www.undp.org/content/dam/undp/library/Environment%20and%20Energy/Climate%20Strategies/Readiness%20for%20Climate%20Finance_12April2012.pdf.

Würtenberger Laura (2013). GCFit: GIZ's Global GCF Readiness Programme, available from <http://www.caribank.org/uploads/2013/05/GIZ%C2%B4s-Global-GCF-Readiness-Programm.pdf>.

<부록 1> GCF NDA 혹은 국가접촉창구 지정한 나라

No.	나라	NDA/Focal Point	비고
1	Antigua and Barbuda	Environment Division Ministry of Agriculture, Lands, Housing and the Environment	FP
2	Armenia, Republic of	Ministry of Nature Protection	NDA
3	Barbados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Affairs	NDA
4	Belize	Ministry of Energy, Science & Technology and Public Utilities	FP
5	Benin, Republic of	Directorate General of Climate Change Management, Ministry of Environment in charge of Climate Change Management, Reforestation, and Protection of Natural and Forest Resources	NDA
6	Bosnia and Herzegovina	Ministry of Physical Planning, Civil Engineering and Ecology	FP
7	Burundi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FP
8	Cameroon	Ministry of Environment, Protection of Na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P
9	Cook Islands	Climate Change Cook Islands Division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NDA
10	Cote d'Ivoire	Bureau of Climate Change (BCC)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DA
11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dvisor in External Funding and Economy,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al Conservation, and Tourism	FP
12	Dominica, Commonwealth of	Ministry of Finance	NDA
13	Dominican Republic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NDA
14	Equatorial Guinea	Ministry of Fisheries and Environment	NDA
15	Eritrea	Ministry of Land, Water and Environment	NDA
16	Ethiopi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 (MEF)	NDA
17	Fiji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Foreign Cooperation	NDA
18	Gambia, Republic of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Affairs	NDA
19	Grenada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Agriculture, Lands, Forestry, Fisheries and the Environment	FP
20	Guinea	National Directorate of Environment	NDA
21	India	Ministry of Environment & Forests	NDA
22	Indonesia	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 (DNPI)	NDA
23	Kenya	The National Treasury Principal Secretary	NDA

24	Kiribati, Republic of	Ministry of Finance & Economic Development	NDA
25	Korea, Republic o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DA
26	Madagascar	Director of Climate Chang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FP
27	Malawi	Director&UNFCCC Focal Point Environmenta lAffairs Department	FP
28	Maldives, Republico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	NDA
29	Mali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gency(AEDD)	NDA
30	Marshall Islands, Republic of	Offic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Coordination	NDA
31	Mauritius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NDA
32	Mongolia	Special Envoy for Climate Change and a Chairman of Climate Change Coordination Offic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reen Development	FP
33	Morocco	Minister delegate in charge of Environment to the Minister Ministry of Energy, Mining, Water and Environment	FP
34	Namibia, Republic o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ourism	NDA
35	Niger	National Council of th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CNEDD)	NDA
36	Niue	Ministry of Finance, Minister of Central Agency Ministry of Finance	NDA
37	Palau	Palau National Grants Office	NDA
38	Rwanda	Rwanda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REMA)	NDA
39	SaintLucia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Affairs and Social Security	FP
40	Samoa	Ministry of Finance	NDA
41	Sao Tome and Principe	General Directorate of Planning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FP
42	Saudi Arabia, Kingdom of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DNA) for CDM Ministry of Petroleum and Mineral Resources	NDA
43	Senegal, Republic o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P
44	Seychelles, Republic of	Seychelle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SSDS) Intersectoral Steering Committee	NDA
45	Solomon Islands	Ministry of Environment, Climate Change, Disaster Management and Meteorology	NDA
46	Somalia	Head of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Offic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FP

47	Syria	Director of Atmosphere Safety Directorate Ministry of State for Environment Affairs	FP
48	Thailand	Director of Climate Change Management and Coordination Division, Office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FP
49	Tanzania	The office of Vice President	NDA
50	Togo	Ministry of Environment	NDA
51	Tunisia	General Directorate of Environment and the Quality of Life	FP
52	Uzbekistan	Minister, Director General Centre of Hydrometeorological Service Cabinet of Ministers	FP
53	VietNam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NDA
54	Yemen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EPA)	NDA
55	Zambia	Ministry of Finance	NDA

출처: http://www.gcfund.org/fileadmin/00_customer/documents/Readiness/2014-8-28_Website_NDA_designation_list.pdf

부록2> AF의 NIE 승인기관

국가	승인기관	기관 구분	홈페이지
자메이카	Planning Institute of Jamaica	Government entity	http://www.pioj.gov.jm
세네갈	Centre de Suivi Ecologique	Institute	http://www.cse.sn
우루과이	Agencia Nacional de Investigacion e Innovacion	Government entity	www.anii.org.uy
베닌	National Environment Fund	Government entity	http://fnebenin.net
사우스 아프리카	South African 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	Institute	www.sanbi.org
벨리제	Protected Areas Conservation Trust (PACT)	Semi-Government agency	http://www.pactbelize.org/
요르단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ment(Ministry)	www.mop.gov.jo
르완다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INIRENA)	Government(Ministry)	www.minirena.gov.rw
케냐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NEMA)	Semi Autonomous Government Agency	http://www.nema.go.ke/
멕시코	Mexican Institute of Water Technology (IMTA)	Institute	http://www.imta.mx/english/
아르헨티나	Unidad para el Cambio Rural (Unit for Rural Change - UCAR)	Government	http://www.ucar.gov.ar/
인도	National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Government entity	http://www.nabard.org
코스타리카	Fundecooperacion Para el Desarrollo Sostenible	NGO(foundation)	http://fundecooperacion.org/
모로코	Agenc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Government agency	http://www.ada.gov.ma/
칠레	Agenci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Chile	Government agency	http://www.agci.gob.cl
페루	Peruvian Trust Fund for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PROFONANPE)	etc.	www.profonanpe.org.pe

출처: <https://adaptation-fund.org/national-implementing-entities>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전담 기관입니다.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제도구축,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 710여건의 프로젝트 사업, 1만여명의 해외 봉사단 파견, 40,000여명의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620여건의 NG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수행 시 환경 및 양성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과 인간다운 삶이 공존하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원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OICA는 지구촌 행복시대 실현에 앞장섬으로써 개도국의 발전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KOICA ODA 연구팀(ODA Research Team)

KOICA ODA 연구팀은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DAC(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하고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ODA 연구팀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ODA 흐름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조화시킨 바람직한 개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ODA 연구팀은 그동안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ODA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KOICA 연구보고서

- KOICA 주요 다자협력 기구 적정성 평가 및 다자협력 운영체계 조사연구
- 개발협력사업에서의 적정기술 활성화 방안
- DEEP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 다자기구 협력사업 개선방안 연구 : 멀티바이와 양자사업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Post-2015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ODA 지원방안
- 기초선조사(Baseline Survey) 수행체계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경제발전이론의 변천과 원조 전략 : 경제적 관점에서 KOICA의 향후 연구 제안
- 개도국 청년고용정책과 ODA :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형성 논의를 중심으로
- 초·중등 교육분야 ODA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 KOICA 성평등 개발협력사업 방안
- 타 해외 원조기관 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체계연구
-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 모델 연구
- 개발도상국 선거제도 지원 ODA연구
-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4D)' KOICA 사업 적용을 위한 타 기관 사례 연구
- 타 해외원조기관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체계 사례연구 : DFID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 가족계획 및 생식보건 ODA 프로그램 현황 연구
- 교육분야 ODA 성과측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PDM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 한국 보건의료 무상 ODA의 협업방안에 관한 연구
-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접근법 활용방안
- 한국적 개발 모델의 교훈 : 효과적 개발 협력과 제도-정책 시너지
-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 CSO 역량강화활동 평가 가이드라인
-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 CSO 국제개발 질적 평가 매뉴얼
- 보건의료체계강화 세부전략 연구 : 최종보고서
- 보건의료체계강화 세부전략 연구 : 세부전략 매뉴얼
- KOICA-경상북도 새마을리더봉사단 평가방안 연구
- 국제개발협력지 2014년 1호
- 21세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과 동향 : 제1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과 2014년 멕시코 고위급 회의를 중심으로
- 글로벌 CSR 사례집
- 국제 새마을운동 ODA사업 표준모형 구축과 콘텐츠 개발
- 국가협력전략(CPS) 수원국 사업환경 분석과 역량진단
-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업(타당성)조사와 수원국 역량진단
- 새마을운동 성공요인과 개도국 적용가능성 및 한계 보완방안

- 국제개발협력지 2014년 2호
-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KOICA 사업모델 발굴
- 교통인프라 ODA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연구
-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도시 협력체계 구축 연구
-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4D) 가이드라인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모잠비크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에티오피아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콩고민주공화국
- 타 해외원조기관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체계 사례연구: 독일 GIZ의 정책 및 수행체계
- ODA 사업에서 효율적인 의료기기 지원 방안 연구
- 글로벌 CSR의 개발협력 현황과 발전과제: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전통지식 개념 도입: 지역개발사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KOICA 국제협력의사제도의 영향과 국제협력의사 출신 보건의료인의 역할 제언
- 환경분야 ODA 사업 유·무상 연계 방안 연구
-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of 63 Cities and Provinces and Analysi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in Vietnam (Vol.1, 2)

개발과 이슈

- [8호]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012년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 결과와 합의
- [9호] 국제사회의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와 우리나라 ODA에 주는 시사점
- [10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 [11호] 개도국 지역공동체개발 논의 동향과 전망 : 새마을운동 ODA 정책과 사업 전략 형성을 위한 시사점
- [12호] 모두를 위한 품위 있는 삶 :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사무총장 보고서
- [13호] 개도국 지역공동체개발 사업 사례 연구 : 새마을 운동 ODA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 [14호] 임팩트투자 및 DIB 논의와 시사점
- [15호] 녹색기후기금과 능력배양사업(Readiness Program)
- [16호] 적정기술과 시장중심적 접근법 : 사회적 기업을 통한 적정기술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Working Paper

- [2014-1]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 The Prospects of Mutual Accountability in South-South Cooperation
- [2014-2] Revisiting the Roles of Development Aid: Resonated between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연구자료 ODA연구 2014-23-194

환경 ODA 사업으로의 녹색기후기금 능력배양사업

발행 2014년 10월
발행인 김 영 목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편집인 ODA연구팀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전화 031) 740-0114
팩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쇄 동 화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물 등록번호 11-B260003-000477-01

ISBN 978-89-6469-254-7 93320

